

감사 결과 보고서

- ○○○○지역본부 외 ○○지사 등 8개 지사 종합감사 -

2015. 7.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2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2015년 업무추진 실적.....	3
3. 2014년 업무추진 실적.....	3
III. 감사결과.....	4
1. 총 평.....	4
2. 지적사항 총괄.....	4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3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3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4
3. 모범사례.....	14
V. 기타사항.....	16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16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16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1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지역본부 및 관내 지사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통하여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마케팅, 영업 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 지적측량, 자산관리, 소방안전교육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시정, 개선, 지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지역본부 외 관내 ○○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민원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 측량(전산)장비 관리의 적정성, 회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업무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관리,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6. 17. 부터 같은 해 7. 6. 까지 13일간 11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9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업무전반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점,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래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	--

구분	강점	약점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도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달성 공사 비전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지사 운영으로 안전사고 등 내부통제 한계 발생 우려
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화된 지적측량 업무처리능력 보유 목표량 달성에 대한 굳은 의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격차가 있는 일부 지사에 대한 인력지원 및 업무소통의 한계 발생 우려

기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화된 인력의 업무영역 및 역할 증대
위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의식 변화 요구에 미온적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본부(3처), 지사(사업단 및 26개 지사): 통합 2 / 겸임 1

○ 인 력

(2015. 6. 30. 현재)

정 원	현 원					측량 팀수	비 고
	계	정 규	담당관	보조인력	청년인턴		
456	447	397	23	27	-	106팀	서무 27(명) 접수 33(명)

2. 2015년 업무추진 실적

2015. 6. 30. 현재

(단위: 필/백만원)

구분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업무명						
합 계	184,358	56,300	88,102	28,346	47.8	50.3
일반업무	78,564	30,539	46,367	17,793	59.0	58.3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105,794	25,761	41,735	10,553	39.4	41.0

3. 2014년 업무추진실적

(단위: 필/백만원)

구분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업무명						
합 계	166,934	52,300	181,716	54,454	108.9	104.1
일반업무	73,481	27,856	84,184	31,247	114.6	112.2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93,453	24,444	97,532	23,207	104.4	94.9

Ⅲ. 감사결과

1. 총 평

○○○○지역본부 및 ○○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다.

「국토정보의 가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본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초과 달성, 고객에게 찬사 받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Happy한 일터”를 본부 운영방침으로 정하여 전 직원이 함께 품격 향상과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는 기관별 목표책임제를 통해 ‘총매출’, ‘공간정보사업 실적’, ‘고객만족도’ 등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과제 7개에 대한 목표 부여와 적극적인 실천 노력으로

각 기관장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한 결과 목표대비 104.1%초과 달성하여 어려운 현실에서도 5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경영 성과 흑자를 이루어 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과제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점검체계를 도입하여 공사 비전 2025 실현과 본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니터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처리기간 일기예보제의 지속적인 실시로 업무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지사 간 자율적인 상호 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2014년도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 운영성과 향상 및 공간정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종합감사 결과 본부에서는 「지사 업무지도 소홀」 등 7건, 8개 지사에서는 「지적측량 종목변경 업무처리 소홀」 등 14건과 「접수증 교부 지침 개정」 등 3건의 사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본부는 전년대비 지적사항 3건이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측량업무의 전반적인 점검과 지적측량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문서 지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건수	36	15	6	3	0	(2)	(3)	(1)			12	(1)
금액	3,346,700		3,346,700			(1,269,400)	(1,985,500)	(91,800)				

※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 시정 내역임.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지적측량 및 전산운영 분야

2015-12 **접수증 교부지침에 관한 사항**

< 요약 >

「업무규정」 제12조,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조(지적측량업무의 접수)

2010년 개정 후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업무처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측량수수료 입금 방법, 측량접수증 용지 수불부(권별), 접수증 수불관리 등 「접수증 교부지침」 개정을 통해 일선 지적측량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 있다고 판단됨.

2015-14 **지적측량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관한 사항**

< 요약 >

지적측량 의뢰고객 개인정보파일 파기(○○○○부-277, 2012. 1.31.)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이 파기되었음에도 '일반접수목록'에서 측량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화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4자리만 노출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파기하였으나, 시스템 화면에 6자리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고 있음.

21-10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요약 >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

SIMC에 건물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국가 시스템 연계·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4. 1. 20.부터 접수된 건물현황측량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를 구조화하여 MOS에 GDB파일을 업로드하고 SIMC에 구축하도록 지시

- 2014년 접수건수 169건 중 146건(86.4%), 2015년 접수건수 32건 중 27건(84.4%), 2개년 총 접수건수 201건 중 173건(86.1%)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가 구축된 GDB파일을 MOS에 업로드 하지 않았으며 이 중 10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21-1 **지사 업무지도 소홀**

< 요약 >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업무지도)

○○○○지역본부에서는 2014. 8. 18. ~ 2014. 9. 18.까지 관내 8개 지사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하면서,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원-모아 서비스 처리,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반환업무처리,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지사 업무지도 소홀 하였다.

21-8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소홀**

< 요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2항

측량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고, 변경된 측량종목의 측량의뢰서를 출력하고 지적측량신청서철에 편철 보관하여 변경된 업무처리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나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보관하지 않고 있음.

21-9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 부적정**

< 요약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1(지적현황측량)가.1).㉞

현황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측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하여야 하나, 지정현황 4건에 대하여 수수료의 130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측량수수료(757,900원)를 착오(과소)수입함.

21-13 지적측량업무(현장)지원시스템 운영 소홀

< 요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및 제25조(업무처리 전산화일 정리확인)

업무지원시스템(COS)에 기록된 측량면적이 정산 시 측량수수료에 변동이 없다하여 접수 당시 면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측량결과도에 등록된 면적과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이 다르며, 측량지원시스템(MOS)에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와 지적소관청에 성과검사 요청한 측량결과도 상의 필수가 일치 하지 않는 등 성과물 관리에 소홀함.

21-14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SMS 전송) 운영 소홀

< 요약 >

업무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0.9 SMS 전송

2014년도에 1,216건의 업무를 처리한 반면, “SMS 문자전송서비스” 이용실적은 354건으로 공사의 전사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와 달리 고객에게 안내 문자 전송 실적이 저조하고, 다양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데도 이용문자 내용이 단순 지적측량수수료 입금 요청 문자와 측량수수료 반환 안내에 머물고 있음. 결국 문자서비스 등과 같은 고객 중심의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이 미흡하여 2014년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본부 평균 98점(S등급) 보다 낮은 90.5점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

21-15 지적측량자료부 운영 소홀

< 요약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0조, 「업무규정」 제20조

등록사항정정 등과 같은 지적공부의 변동사항과 측량에 사용한 관련 자료는 향후 후속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되어야 한다.

- '13년 이후 등록사항정정 통보 건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음.
- 토지분할 제18호외 25건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 기록·관리하지 않음.

21-16 지적측량수수료지적공부등록지 구분 적용 부적정

< 요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2014년도 경계복원측량 274호, 510호의 접수 내용의 확인 절차가 소홀함으로 인하여 수치로 등록되어 있는 측량필지가 토지로 착오 접수되었고, 착오 접수된 지적공부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과소(511,500원)하게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

21-19 지적측량 업무 처리(검사요청 등) 소홀

< 요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 완료 이후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검사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에도 즉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2015. 6. 17. 현재까지 39건의 업무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중인 상태로 무단 지연되고 있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 발생이 우려

21-20 지적측량 접수 및 연기처리 소홀

< 요약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업무의 연기처리)의 의해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5. 6. 3.일자 「지적측량 수행(변경) 계획내역서」를 샘플로 확인한 결과 임회불가, 허가서류 변경, 분할선 미결정 등 신청자의 연기요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기신청서 등 근거서류가 미흡.

나. 인사행정 분야

2015-13 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민원발생 가감점)에 관한 사항

<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에 가감점 평가 “민원 가감점” 부여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 마련과 「같은 지침」 제6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제38조(등록 대상 업무) “시스템 등록 대상 업무 재분류” 및 “근무성적 설명자료” 민원 발생 가감점 평가 방법의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21-2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율

<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제36조

2014년 민원업무 처리 가감점 처리 대상 22건 중 2건은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에 등록 되지 않았고, 3건은 등록된 자료 중 ‘성과동일’을 ‘성과정정’으로 착오 입력하는 등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의 민원 가감점이 적정하지 않게 평정됨.

21-6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호봉 획정 및 승급 처리 소율

< 요약 >

「인사규정」 제20조 (승진임용의 제한), 「급여규정」 제19조 (승급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강등·정직 3년, 감봉 2년, 견책 1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
- 4명의 직원에 대하여 승급제한 및 호봉획정 소홀

다. 회계사무 분야

21-3 교육훈련여비 지급 부적정

< 요약 >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육훈련여비)

○○지사에 대한 2015년 종합감사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부에서 실시한 직장교육 여비지급을 조사한 결과, 기타일에 대하여 여비규정상 일비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등 제 규정 준수에 소홀.

21-4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 요약 >

「여비규정」 제11조(여비지급의 예외) 및 제12조(부임여비 등)

지사 업무지원을 위해 3개월 미만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별도의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부임여비로 일비, 식비 1,555,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21-5 회의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 요약 >

「재무규정」 제20조(지출), 「임직원행동강령」 및 제35조(투명한 회계처리)

회의비를 집행할 때에는 참석인원, 회의 내용 등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회의에 참석한 명단, 회의 관련 내용 등 기본적인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한 채 회의비를 집행하였음.

21-11 민원창구수당 지급 소홀

< 요약 >

「급여규정 제6조」 민원창구수당

민원창구수당은 지사서무 및 민원(접수)창구 담당자에게 월 70,000원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하는 수당은 보수에 해당하며 보수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 민원창구 대체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하지 않음
(150,500원 회수 / 91,800원 지급)

21-17 지사 기타계좌 시재관리 소홀

< 요약 >

「재무규정」 제17조(수입금의 수납) 및 「회계사무처리규칙」 제37조(지출계좌설치)

지사 기타계좌에 대한 현금출납등록현황을 등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누락하여 시재관리를 소홀히 함.

21-18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처리 소홀

< 요약 >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사. 업무추진비(11p)

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자료수집·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 격려, 간담회, 기타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배정된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기관운영비”로 ERP에 등록(총 14건)
- 「부가가치세법」상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 예산계정과목 적용에 소홀

라. 자산관리 분야

21-7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소홀

< 요약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책임자는 부동산의 화재예방 등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효율적 방화관리에 관한 소방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힘써야 함. 그러나 화재예방 모의 훈련시 중요 문서 및 중요 측량장비 반출에서 중요물품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미진하였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연 1회로 강화되어 2014년 상반기 종합정밀 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미실시. 또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 사무분장에 편재하여 위기대응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됨.

21-12 지사 사옥 전기안전 점검 소홀

< 요약 >

「전기사업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및 「시설물 안전점검(화재예방 등) 철저(○○실-2063, 2013. 4. 1., ○○실-3979, 2014. 5.26)」

자가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사옥 신축(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 전기안전 점검을 의뢰하여 점검한 실적이 없는 등 지사 사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

21-21 측량장비 및 성능검사장 관리 소홀

< 요약 >

「측량장비 성능검사 및 수리업무개선」

연 1회 이상 측량장비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측량장비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유지와 방화·방충 및 도난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측량장비점검부에 점검실적을 기록·관리하도록 지시

- 성능검사장 시설 일부가 망실되었으며, 측량장비 성능에 대한 분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측량장비 성능관리에 소홀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권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5-12	○○실	집수증 교부지침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2015-13	○○처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민원발생 가감점)에 관한 사항	개선			"	
2015-14	○○처	지적측량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관한 사항	개선			"	
21-1	○○처	지사 업무지도 소홀	통보			1개월	
21-2	○○처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홀	통보			"	
21-3	○○처	교육훈련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280,000(회수)		"	
21-4	○○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시정	1,555,000(회수)		"	
21-5	○○처	회의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21-6	○○처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호봉 확정 및 승급 처리 소홀	시정			"	
21-7	○○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소홀	통보			"	
21-8	○○지사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소홀	통보			"	
21-9	○○지사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 부적정	시정	757,900(추정)		"	
21-10	○○지사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	
21-11	○○지사	민원창구수당 지급 소홀	시정	150,500(회수) 91,800(지급)		"	
21-12	○○지사	지사 사육 전기안전 점검 소홀	통보			"	
21-13	○○지사	지적측량업무(현장)지원시스템 운영 소홀	통보			"	
21-14	○○지사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SMS 전송) 운영 소홀	통보			"	
21-15	○○지사	지적측량자료부 운영 소홀	통보			"	
21-16	○○지사	지적측량수수료(지적공부등록지 구분) 적용 부적정	시정	511,500(추정)		"	
21-17	○○지사	지사 기타계좌 시재관리 소홀	통보			"	
21-18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처리 소홀	통보			"	
21-19	○○지사	지적측량 업무 처리(검사요청 등) 소홀	통보			"	
21-20	○○지사	지적측량 접수 및 연기처리 소홀	통보			"	
21-21	○○지사	측량장비 및 성능검사장 관리 소홀	통보			"	

※ 처분요구: 24건<개선 3건, 통보 15건, 시정 6건(회수: 3,254,900원 / 지급: 91,800원)>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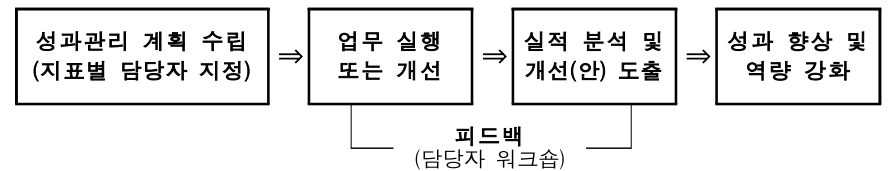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계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1	○○처	민원처리(자료등록, 성과협의회 등) 소홀	현지(통보)		
2	○○지사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소홀	"		
3	○○지사	출장여비 지급 소홀	"		
4	○○지사	반환업무처리 소홀	"		
5	○○지사	지적측량준비파일 및 개인정보 관리 소홀	"		
6	○○지사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		
7	○○지사	세출 예산 지출과목 적용 소홀	"		
8	○○지사	측량(전산)장비 및 공기구비품관리 소홀	"		
9	○○지사	범원감정측량 업무처리 소홀	"		
10	○○지사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 소홀	"		
11	○○지사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소홀	"		
12	○○지사	측량(전산)장비 및 공기구 비품관리 소홀	"		

3.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5-14
제 목	전략과제 지표 성과관리 점검체계 운영

□ 요 지

- 비전 2025 실현과 본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지표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니터링활동 실행 및 성과 창출



□ **내 용**

○ **전략과제지표 주기적 성과관리**

- 전략과제지표를 주요사업 및 성과지표에 따라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경영평가 일부 지표와 연계

구 분	책 임 담 당 자		내부평가 연계지표	비 고
	소 속	성 명		
총괄	○○○○처	○○○		
경영관리부문	○○○○처	○○○	· 운영성과 · 계량관리업무비율 · 미수수료 수입노력	
고객부문	○○○○처	○○○	· 고객만족도 · 민원발생	
핵심사업부문	○○○○처	○○○	· 업무목표 달성도 · 업무추진실적 · 개방업무 수주	지적측량 재조사사업
미래성장부문	○○○○처	○○○	· 업무목표 달성도 · 업무추진실적 · 공간정보업무 운영성과	공간정보

- 분기별 지표별 책임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실적 피드백을 통해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안) 도출하여 업무담당자와 공유
 - 2014년도 내부경영평가지표 개선의견 검토
 - 2013년도 내부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우수본부 벤치마킹
- 업무성과 보고회(연말)를 개최하여 개인별 업무성과 보고 및 피드백으로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잘된 점**

○ **전년대비 전략과제지표 성과 향상으로 본부 내부역량 강화**

지 표 명	'13년 실적	'14년 목표	'14년 실적	성과달성도
총매출액	530억원	523억원	545억원	104.1%
팀당생산성	553백만원	503백만원	566백만원	112.6%
1인당생산성	131백만원	131백만원	133백만원	101.2%
운영성과	115억원	118억원	110억원	95.5%
공간정보사업	60.4억원	62.4억원	69.6억원	111.5%
고객만족도	90.5점	92.4점	98.0점	106.1%

-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지출 상승(전년대비 +24억원)으로 전년대비 운영성과 5억원 하락

□ **향후계획**

- 본부 중기 및 단기사업계획 수립 시 전사 계획과 연계성 강화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관리이행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 방문 기관
 - 7. 2. : ○○지사 외 4개 기관
 - 7. 3. : ○○지사 외 4개 기관
- 참석자 : 감사, 지사장 및 직원 등 107명
- 교육내용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사명변경 등 공사 정책, 안전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

- 붙임: 1. 지적사항 총괄 명세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4부.
3. 현지조치(처분)서 12부. 끝.

감 사

개 선 요 구

제 목 접수증 교부지침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업무규정」 제12조(일반업무의 접수) 제5항에 따라 “측량자가 현지 출장 시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하고, 해당 토지가 이미 작성된 측량준비도안에 있거나 측량자료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측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측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자는 귀사 즉시 관련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지적측량의뢰서 등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수입한 수수료는 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입출금 창구가 마감 후인 경우에는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처리하며, 측량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조(지적측량업무의 접수) 제3항에 따르면 “지사장은 일일 수입된 수수료의 입금내용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측량종목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일계표를 관리한다. 이 경우 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업무의 전산정보처리명세, 자금송금결의서, 수수료반환금, 미수수료 수입관리대장 및 입금계좌 등을 상호대조확인 하여야 하며, 자금송금결의서와 미수수료 수입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고 되어있다.

이에 지적측량을 현장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입금표를 바로 교부하지 못함에 따라 측량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접수증 교부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2차 개정(2010. 7. 5.) 후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업무처리 환경이 반영되지 않아 지침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

[접수증 교부지침 개정(필요성) 현황]

구분	개정(필요성) 현황
접수증 교부지침	현지 측량 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입금이 가능
	접수증 용지가 대량으로 필요치 않아 본사에서 접수증을 본부 및 지사에 배부하고 있지 않고, 본부 및 지사에서도 접수증 수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3조 용지의 수불관리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측량접수증 용지수불부” 불필요 “삭제”
	용지 수불관리와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필요

[2012년 ~ 2015년 6월 현재 전국 현장접수, 현장처리(MOS) 현황]

구 분	지역본부	지사	소재지	건수	비고
계	7개 본부			21	
2012	○○	○○지사	청평면 ○○리 150	1	현장접수
	○○○○	○○지사	서부면 ○○리 453-1	1	현장처리
2013	○○	○○지사	관인면 ○○리 산248	1	현장접수
	○○	○○지사	가평읍 ○○리 50-13	1	현장접수
	○○○○	○○지사	청소면 ○○리 601-1	1	현장접수
	○○	○○지사	○동 137	1	현장처리
	○○○○	○○지사	호계면 ○○리 173-1	1	현장접수
	○○○○	○○지사	○동 511-1	1	현장처리
	○○○○	○○지사	호계면 ○○리 173-1	1	현장처리
2014	○○	○○지사	둔내면 ○○리 산154-1	1	현장접수
	○○	○○지사	서면 ○○리 1125	1	현장처리
	○○	○○지사	하면 ○○리 514	1	현장접수
	○○○○	○○지사	장군면 ○○리 302-9	1	현장접수
	○○○○	○○지사	연서면 ○○리 948-48	1	현장접수
	○○○○	○○지사	청양읍 ○○리 205	1	현장접수
	○○○○	○○지사	장군면 ○○리 302-9	1	현장처리
	○○○○	○○지사	장군면 ○○리 302-9	1	현장처리
	○○	○○지사	마천면 ○○리 1159-3	1	현장접수
	○○○○	○○지사	예천읍 ○○리 68-3	1	현장접수
2015	○○	○○지사	방림면 ○○리 산1	1	현장접수
	○○	○○지사	신림면 ○○리 417-7	1	현장접수
현장접수	현장에서 접수 해오는 것				
현장처리	현장에서 측량까지 처리한 것				

[2013년~2014년 ○○○지역본부 현장접수, 현장처리(MOS) 현황]

구분	지역본부	지사	소재지	건수	측량접수증 용지(권별)	수불부	접수증	비고
계		3개 지사		4				
2013			호계면 ○○리 173-1	1	×	×	×	현장접수
			○○동 511-1	1	×	×	×	현장처리
			호계면 ○○리 173-1	1	×	×	×	현장처리
2014			예천읍 ○○리 68-3	1	×	×	×	현장접수

공사에서는 2012년~2015년 현재까지 위현황과 같이 현장접수 14건, 현장처리 7건 총 21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시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지역본부의 경우 2013년~2014년까지 총 4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시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면서(현장처리 및 현장접수) 측량접수증 용지(권별), 수불부, 접수증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개정 후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업무처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측량수수료 입금 방법, 측량접수증 용지 수불부(권별), 접수증 수불 관리 등 「접수증 교부치짐」 개정을 통해 일선 지적측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실장은 2010년 개정 후 업무처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측량수수료 입금 방법, 측량접수증 용지 수불부(권별), 접수증 수불 관리 등 「접수증 교부치짐」을 전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개 선 요 구

제 목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민원발생 가감점)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공사는 지적측량 민원에 대하여 고객(민원)의 신뢰 확보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을 제정(2013. 12. 31.)하여 민원업무 제도 개선을 통해 1차 개정(2014. 12. 31.), 2차 개정(2015. 4. 16.)을 하였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가감점 평가에서 “민원 가감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도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무성적평정 실시(○○부-5968: 2014. 11. 20.) 직원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3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일반직원),” 5. 근무성적평정 작성요령, 바. 가감점 평가, (2)민원발생 감점, (3)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가감점 현황]

구분	근무성적평정규칙(별지 제2호 서식)		건당 점수
민원 가감점	가산	진정, 탄원, 실시측량처리시 가산점	1 ~ 3건: 1.0점
			4 ~ 6건: 2.0점
			7건 이상: 3.0점
	감점	성과정정 민원발생 감점	1 ~ 2건: 1.0점
			3 ~ 4건: 2.0점
			5건 이상: 3.0점

[근무성적평정 작성요령(2)민원발생 감점, (3)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 가감점 현황]

구분	근무성적평정 작성요령(가감점평가)	건당 점수
가감점 평가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 각 건별로 진정, 탄원, 실사측량 처리 시 가점하며,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 대상자 선정은 본사, 본부 및 지사에 접수되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함. ※ 본인이 측량한 것에 민원이 발생하여 재 측량한 경우 가점부여 안됨	1 ~ 3건: 1.0점 4 ~ 6건: 2.0점 7건 이상: 3.0점
	민원발생 감점 각 건별로 해당 감점을 기재하되 성과정정 민원발생분이며, 민원발생 감점 대상자 선정은 본사, 본부 및 지사에 접수되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함.	1 ~ 2건: 1.0점 3 ~ 4건: 2.0점 5건 이상: 3.0점

그러나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에 “민원 가감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성적평정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가감점 평가 “민원 가감점”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 가감점” 처리요령을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014년 0000지역본부 민원업무 처리 가감점 현황]

민원번호	민원내용			처리결과	확인측량자			건수	가산점	당초측량자			비고
	접수일자	신청인	토지소재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014-001195	2014-11-13	김○○	구미시 선산읍 ○○리 138- 5	성과동일	3급						4		
2014-000478	2014-04-26	유○○	구미시 ○○동 176	성과동일	3급						4		
2014-000194	2014-02-19	서○○	구미시 도개면 ○○리 산102- 2	성과동일	3급			6	2		4		
2014-000081	2014-01-17	이○○	구미시 ○○동 439	성과동일	3급						4		
2014-000336	2014-04-01	김○○	구미시 옥성면 ○○리 476- 1	성과동일	3급						3		
2013-001058	2013-12-26	이○○	구미시 ○○동 292- 12	성과동일	3급						4		대상아님
2014-001166	2014-11-05	배○○	안동시 ○○동 368	성과동일	3급			2	1		4		
2014-000264	2014-03-17	이○○	안동시 길안면 ○○리 434	성과동일	3급						4		
2014-001103	2014-10-15	성보○○	대구시 달서구 ○○동 246- 1	성과동일	3급			1	1		4		
2014-001046	2014-09-25	최○○	상주시 위남면 ○○리 260	성과동일	4급			1	1		3		
2014-000855	2014-07-24	김○○	영천시 청룡면 ○○리 231- 2	성과동일	4급			1	1		4		
2014-000831	2014-07-17	영덕○○	영덕군 옥산면 ○○리 204- 4	성과동일	4급			1	1		4		
2014-000696	2014-06-23	서○○	안동시 길안면 ○○리 57- 6	성과동일	4급			1	1		4		
2014-000508	2014-05-07	이○○	영주시 ○○동 111- 6	성과동일	4급			1	1		3		
2014-000365	2014-04-07	성○○	영천시 대정면 ○○리 657- 2	성과동일	4급			1	1		3		
2014-000029	2014-01-09	정○○	대구시 북구 ○○동 1430- 3	성과동일	3급			1	1		4		
2014-001223	2014-11-21	배○○	안동시 ○○동 896- 1	성과동일	4급			1	1		4		
2014-000703	2014-06-17	황○○	봉화군 봉화읍 ○○리 394- 34	성과정정	4급			1	1		4		본인처리
2014-000677	2014-06-12	이○○	상주시 화동면 ○○리 709- 3	성과정정	4급			1	-1				본인처리
2014-000703	2014-06-17	황○○	봉화군 봉화읍 ○○리 394- 34	성과정정	4급			1	-1				본인처리
2014-000706	2014-06-18	김○○	청송군 진보면 ○○리 127- 15	성과정정	4급			1	-1				본인처리
2014-001180	2014-11-05	이○○	경주시 천북면 ○○리 95	성과정정	4급			1	-1				본인처리

[2014년 0000지역본부 민원업무 처리 CRM 미등록 및 등록오류 현황]

민원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토지소재	CRM 처리결과 등록오류		확인측량자			건수	가산점 적용 오류			비고
				오	정	소속	직급	성명		오	정		
2014-001195	2014-11-13	김○○	구미시 선산읍 ○○리 138- 5	성과동일	미등록	구미지사	3급	박○○	2	-	-		
2014-000478	2014-04-26	유○○	구미시 ○○동 176	성과동일	미등록	구미지사	3급	박○○					
2014-000677	2014-06-12	이○○	상주시 화동면 ○○리 709- 3	성과정정	성과동일	상주시사	4급	정○○	1	-1	0		본인처리
2014-000706	2014-06-18	김○○	청송군 진보면 ○○리 127- 15	성과정정	성과동일	의성지사	4급	김○○	1	-1	0		본인처리
2014-001180	2014-11-05	이○○	경주시 천북면 ○○리 95	성과정정	성과동일	경주시사	4급	정○○	1	-1	0		본인처리

이에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고도화 이후 2010년 이후 지적측량민원 건에 대하여 고객관계관리시스템에 전량 등록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규칙」 가감점 평가 “민원발생 감점”,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 평가를 “본사, 본부 및 지사에 접수되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함.”으로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에 되어있으나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0000지역본부 민원업무처리 가감점 평가에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미등록 2건, CRM 처리결과 등록오류 3건에 대하여 가감점 적용 오류가 발생하는 등 「근무성적평정규칙」 가감점 평가 “민원발생 감점”, “민원발생 재측량 가점” 업무처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tem) 제38조(등록 대상 업무) “시스템의 등록대상 업무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어, 등록 대상 업무에 대하여 재분류의 필요성이 있다.

[등록 대상 업무]

구분	등록대상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
1	지적측량성과 차이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기타
2	공사업무일반	측량착오자 처분 및 불건결 직인, 지적측량관련 법령, 지적측량용어, 측량성과오차 등
3	사후관리	지목변경, 분할 및 합병처리절차, 등록사항처리절차, 적부심사처리절차, 경계점표지 관련
4	지적측량신청	측량성과도 재발급, 측량서비스제도, 측량의뢰, 측량소요기간, 입회인, 측량수수료 등
5	-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소송, 보험청구, 적부심사, 인사조치 등

그러므로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에 가감점 평가 “민원 가감점” 부여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 마련과 「같은 지침」 제6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tem) 제38조(등록 대상 업무) “시스템 등록 대상 업무 재분류” 및 “근무성적 설명자료” 민원발생 가감점 평가 방법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처장은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에 가감점 평가 “민원 가감점”부여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 마련과 「같은 지침」 제6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Customer Relation Management System) 제38조(등록 대상 업무) “시스템 등록 대상 업무 재분류” 및 “근무성적 설명자료” 민원발생 가감점 평가 방법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개 선 요 구

제 목 지적측량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주체¹⁾의 권리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가 확대됨으로 인해 공사에서는 지적측량 의뢰고객의 개인정보 관리가 주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지적측량 의뢰고객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보유 목록을 정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자발적 개인정보파일 파기로 외부에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봉쇄하고자 지적측량 이력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표 1. 파기 대상 및 주기]

개인정보목록	파기 전	파기 후	적요	주기
성명	홍길동	길동		13개월 보관 후 연차적 파기
주민등록번호	110101-1234567	1101		
주소	전주 완산구 기지로 120	-	파기	
전화번호	063-906-5000	5000		
e-메일	lx@lx.or.kr	-	파기	
신용카드 정보	1234-2345-3456-4567	-	파기	

※ 지적측량 의뢰고객 개인정보파일 파기(정보운영부-277, 2012.1.31.) 참조

1)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표 2. 2013년도 군위지사 지적측량 조회 화면]

① 일반접수목록 화면						② 일반접수목록에서 세부내역 확인 화면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신원준	5300*****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신원준	5300*****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신원준	5205*****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신원준	6010*****	
000	현승철	원료	전화	개인	권기철	391009*****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김윤환	48222*****	
000	최학민	원료	전화	개인	서수원	40200*****	
개인정보 누출됨						개인정보 파기되어 있음	

※ 업무지원시스템(COS)에서 추출된 ①,②화면은 동일 신청인의 화면임.

그러나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이 파기되었음에도 ‘일반접수목록’에서 측량현황을 조회하는 경우 파기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화면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하면 개인정보가 정상적으로 파기되어 있어 시스템의 오류가 확인된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는 <표 1>과 같이 앞 4자리만 노출되도록 정책을 수립해 파기하였으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6자리로 노출되고 있어 개인정보 파기 이후 그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본사 ○○처장은 개인정보 파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파기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점검) 절차(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지사 업무지도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업무규정」 제28조(실시 및 통보) 제2항에 따르면 “지역본부장은 연1회 지사에 대하여 지적측량업무처리 등 제반사항을 업무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7조(업무지도) “지적측량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지도는 목표량 책정 및 달성여부, 업무접수 및 처리상황, 미수수료 관리 적정여부, 업무처리 전산화일 관리 적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의 적정여부, 수수료 반환 및 업무지연처리의 적정여부, 각종 전산시스템운영 및 S/W 관리실태,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작성 발급의 적정여부, 개방업무 추진 및 신규업무 활동상황, 민원(진정)처리 사항, 사무분장 업무처리 적정여부, 그밖에 지적측량업무처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접수는 의뢰받은 업무종목의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하며, 정산은 측량자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부 등의 결과에 의하여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한다.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한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추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한 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입금표를 발급한다.”고 되어있다.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1(지적현황측량)가.1). 제7항에 “인·허가 선이나 도시계획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적측량 A/S 제도」 개선(○○○○부-3498: 2011.9.30.)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재의뢰 하지 않아도 현장여비 납부로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원-모아(One-Mor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적용대상을 “현장공사 등으로 당초 측량한 경계 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와 측량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본사 ○○처에서는 SIMC에 건물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국가 시스템 연계·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4. 1. 20.부터 접수된 건물현황측량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를 구조화하여 MOS에 GDB파일을 업로드하고 SIMC에 구축하도록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부-181: 2014. 1. 15.)” 시행취지와 매뉴얼을 시달하였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등) 제1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따르면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예시 1”에 따라 면적측정 정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현지측량방법 등) 제10항에 따르면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정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2014. 12. 31.시행) 따라서 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의 “[예시 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에 따라 **도해지역의 면적측정부에 “좌표”로 기재하던 사항을 “전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가.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소홀

- 업무처리 과정에서 측량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고, 변경된 측량종목의 측량의뢰서를 출력하여 지적측량신청서철에 편철 보관하여 변경된 업무처리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적측량 종목변경 측량의뢰서 일부 발취(지사)]

구분	접 수			종목변경 현황			토지소재지	측량자 (정산)	비고
	일자	종목	번호	일자	종목	번호			
1	2014.01.10	분할측량	22	2014.01.10	지적현황	7	기계면 ○○리 산109번지		
2	2014.02.06	경계복원	52	2014.02.06	지적현황	17	청학면 ○○리 424번지		
3	2014.04.02	경계복원	236	2014.04.02	지적현황	51	홍해읍 ○○리 116번지		
4	2014.04.24	경계복원	308	2014.04.24	지적현황	62	○○동 224번지		
5	2014.05.08	경계복원	265	2014.05.08	지적현황	56	오천읍 ○○리 268-3번지		
6	2014.05.26	분할측량	272	2014.05.26	지적현황	79	신광면 ○○리 120-3번지		
7	2014.05.28	지적현황	60	2014.05.28	분할측량	217	연일읍 ○○리 90-41번지		
8	2014.05.30	경계복원	441	2014.05.30	지적현황	85	죽장면 ○○리 845번지		
9	2014.06.23	분할측량	241	2014.06.23	지적현황	77	○○동 229-248번지		
10	2014.07.11	지적현황	113	2014.07.11	경계복원	573	홍해읍 ○○리 228-6번지		
11	2014.07.17	분할측량	375	2014.07.17	등록진환	11	○○동 산1번지		
12	2014.08.05	경계복원	597	2014.08.05	지적현황	134	○○동 560-29번지		
13	2014.08.13	분할측량	427	2014.08.13	지적현황	138	신광면 ○리 산85-1번지		
14	2014.10.01	분할측량	483	2014.10.01	지적현황	157	신광면 ○○리 705-36번지		
15	2014.10.01	분할측량	380	2014.10.01	지적현황	119	구항포읍 ○○리 632번지		
16	2014.11.03	지적현황	174	2014.11.03	분할측량	562	○○동 333-7번지		
17	2014.11.12	경계복원	880	2014.11.12	지적현황	184	홍해읍 ○○리 10-2번지		
18	2014.11.20	경계복원	919	2014.11.20	지적현황	201	홍해읍 ○○리 392번지		

나.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 부적정

- 현황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측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하여야 한다.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착오 적용 일부 발취(지사)]

(금액단위: 원)

소관청	접수일	종목 (번호)	토지 구분	토지소재지	정산내역(부가세포함)						측량자 (정산)	비고	
					오			경					차액
					적요	수량	금액	적요	수량	금액			
북구	2014-03-14	지적현황 (37)	토지	홍해읍 ○○리 805	100%	3	763,400	130%	2	711,700	169,400		
북구	2014-07-07	지적현황 (107)	토지	신광면 ○○리 199-1	100%	2	442,200	130%	2	574,200	132,000		
북구	2014-07-07	지적현황 (111)	토지	송라면 ○○리 90	100%	2	446,600	130%	2	579,700	133,100		
북구	2014-10-21	지적현황 (167)	토지	○○동 312	100%	4	1,190,200	130%	4	1,513,600	323,400		
	계	6건				11	2,842,400		11	3,600,300	757,900		

다.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 현지출장 후 성과제시가 불가할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퍼센트 반환처리 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적측량 관련 자료를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반환(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일부 발취(지사)]

(단위: 원)

접수일	종목(번호)	토지소재지	수량	금액	측량자	비고
'14. 3. 11.	경계복원(200)	영주시 ○○동 714	1	562,100		성과제시불가
'14. 8. 11.	경계복원(580)	영주시 ○○동 81-3	1	562,100		"
'14. 9. 4.	경계복원(615)	영주시 ○○동 422-94	1	772,200		"
'14. 10. 1.	경계복원(660)	영주시 ○○동 718	1	562,100		"

라. 원-모아(One-More) 서비스 처리 부적정

-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당초 표시한 경계복원점의 확인을 위하여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원-모아(One-More) 서비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2014년 ~ 2015년 6월 현재. 원-모아 서비스 적용 누락 현황]

기관명	토지소재	종목	접수 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원-모아 적용 대상 여부	접수일 (완료일)
계	6건						
○○지사	양남면 ○○리 산152-2	경계복원	1740 125	2013-10-18 2014-01-10	2013-11-01 2014-01-27	적용 대상	70일
○○지사	○○동 78-18	경계복원	1077 190	2013-12-04 2014-02-24	2013-12-16 2014-02-26	적용 대상	70일
○○지사	산동면 ○○리 154-13	경계복원	71 219	2014-02-12 2014-04-24	2014-02-25 2014-05-09	적용 대상	58
○○지사	성주읍 ○○리 1064-2	경계복원	196 374	2015-02-25 2015-04-02	2015-03-12 2015-04-09	적용 대상	21
○○지사	동명면 ○○리 654	경계복원	864 1002	2014-08-28 2014-10-16	2014-09-15 2014-10-27	적용 대상	31
○○지사	명호면 ○○리 산280	경계복원	19 209	2014-01-03 2014-04-11	2014-01-16 2014-04-28	적용 대상	85

마.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SIMC에 건물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국가 시스템 연계·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4. 1. 20.부터 접수된 건물현황측량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를 구조화하여 MOS에 GDB파일을 업로드하고 SIMC에 구축하도록 “정부 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계획 문서 지시 현황]

시행기관	문서제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지역본부 ○○처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	○○처-704	2014. 1. 16.
	'14년 1분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3695	2014. 4.30.
	'14년 상반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6188	2014. 7.17.
○○○○지역본부 ○○처	'14년 11월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10145	2014. 2. 9.
	'15년 1분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314	2015. 4.10.
	건물공간정보 구축 업무 철거	○○처-644	2015. 6.10.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일부 발체(지사)]

구 분	지적현황(건물, 구획) 접수건수(A)	건물 공간정보 등록건수(B)	건물 공간정보 미등록건수(C)	비 율(%)		비 고
				A:B	A:C	
계	201	28	173	13.9	86.1	
2014	169	23	146	13.6	86.4	정산소홀 (10건)
2015 (6. 23. 현재)	32	5	27	15.6	84.4	-

※ [붙임 1] 2014년, 2015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일부 발체 세부 현황(포항지사)

바.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등) 제1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 “예시 1”에 따라 면적측정 정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붙임 2] 2014년, 2015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누락 일부 발체(포항지사)

사.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수수료 반환업무 소홀

- 2013년, 2014년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3년 ~ 2014년 12.31.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발체(지사)]

구분	소관청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반환일자	측량팀장	일수	반환율	수수료 반환		차액
										정	오	
계		4건								2,593,000	2,712,000	119,000
2013	남구	경계복원	562	2013-11-01		2013-11-07		4	100%	357,000	390,000	33,000
	북구	경계복원	452	2013-05-23		2013-05-29		4	100%	702,000	735,000	33,000
	북구	지적현황	16	2013-02-20		2013-02-26		4	100%	559,000	578,000	19,000
2014	남구	경계복원	33	2014-01-10		2014-01-15		3	100%	975,000	1,009,000	34,000

아.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수수료 반환업무 소홀

- 2014년, 2015년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은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4년 ~ 2015년 6월 현재. 출장하여 측량착수 전 반환 일부 발체(지사)]

구분	소관청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반환일자	측량팀장	출장여부	반환율	수수료 반환		차액
										정	오	
계		3건								1,938,000	2,210,000	272,000
2014	남구	지적현황	2	2014-01-01		2014-01-06		○	100%	851,000	911,000	60,000
2015	남구	경계복원	2	2015-01-10		2015-05-08		○	100%	667,000	773,000	106,000
	남구	경계복원	4	2015-01-01		2015-01-28		○	100%	420,000	526,000	106,000

자. 고객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수수료 반환업무 소홀

- 2013년, 2014년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시 고객(의뢰인) 가족의 통장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2015년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 또는 실제 측량수수료를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2013년 고객동의 및 가족증명 미 첨부 일부 발취(○○지사)]

구분	소관청	종목	접수번호	반환일자	측량담당	의뢰인(신청인) 동의서 및 가족 증명 서류
2013	북구	경계복원	162	2013-03-13		없음

차. 지적측량 자료조사부 등록 소홀

- 「고객성향 및 측량자료부 정보 관리방법 변경(○○부-1716:2012. 6. 21.)」에 따르면 현장지원시스템(MOS)에 업무 정산과 동시 측량자료부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자료부 등록 철저(○○○실-1926:2013. 5. 9.)」에 따라 해당 지적측량 건에 대한 특기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료부에 미등록된 완료 건을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2013년 ~ 2015년 5월말 현재. 지적측량 자료조사부 미등록 현황]

기관명	계(건)	2013년	2014년	2015년 5월말 현재
계	180	61	54	65
○○지사	42	8	11	23
○○지사	25	11	1	13
○○지사	19	13	2	4
○○지사	31	21	6	4
○○지사	10	2	3	5
○○지사	33	2	23	8
○○지사	12	2	6	4
○○지사	8	2	2	4

카.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부적정

- 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의 “[예시 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에 따라 도해지역의 면적측정부에 “좌표”로 기재하던 사항을 “전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좌표) 작성 부적정 일부 발취(○○지사, 2015. 6월 현재)]

구분	계	등록전환	분할측량	지적현황	작성현황		비고	
					정	오		
계	324	8	249	67			전자(7건)	
남구	일반	75	1	66	8	전산	좌표(전자)	전자(3건)
	특수	21	-	14	7	전산	좌표(전자)	전자(2건)
북구	일반	206	7	151	48	전산	좌표(전자)	전자(2건)
	특수	22	-	18	4	전산	좌표	-

그런데도 ○○○○지역본부에서는 2014. 8. 18. ~ 2014. 9. 18.까지 관내 8개 지사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 종목 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원-모아 서비스 처리,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반환업무 처리,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지사 업무지도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지역본부장은 관내 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사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 처리는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 적용)는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③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처리는 「지적업무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④ 원-모아 서비스 업무처리 는 「지적측량 A/S 제도」 개선(○○부-3498: 2011. 9. 30.) 내용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⑤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는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 정보 구축 추진(○○부-181: 2014. 1. 15.) 시행취지와 매뉴얼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⑥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작성 업무는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⑦ 반환업무처리는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지적측량 자료조사부 작성 업무는 미등록 된 지적측량 자료조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전량 등록 조치하시고,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⑨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업무는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4년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일부 발취 세부 현황(지사)]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남구	11	2014-01-24	○○동 170-11	구획	2014-01-27	1		
남구	17	2014-02-10	호미곶면 ○○리 886-14	구획	2014-02-20	1		
남구	18	2014-02-17	연일읍 ○○리 75-3	구획	2014-02-28	2		
남구	19	2014-02-20	호미곶면 ○○리 886-73	구획	2014-03-05	1		
남구	23	2014-03-05	연일읍 ○○리 (731-2)	구획	2014-03-14	1		
남구	27	2014-03-07	호미곶면 ○○리 886-4	구획	2014-03-17	1		
남구	28	2014-03-10	연일읍 ○○리 75-3	구획	2014-03-12	1		
남구	29	2014-03-10	구룡포읍 ○○리 131	점	2014-03-21	1		정산소홀
남구	30	2014-03-17	장기면 ○○리 359-1	구획	2014-03-19	1		
남구	31	2014-03-18	연일읍 ○○리 180-5	구획	2014-03-27	1		
남구	32	2014-03-20	호미곶면 ○○리 79-1	구획	2014-03-31	1		
남구	38	2014-03-26	○○동 254-329	구획	2014-03-31	1		
남구	40	2014-04-02	대송면 ○○리 627-1	구획	2014-04-08	1		
남구	41	2014-04-02	연일읍 ○○리 177-1	구획	2014-04-09	1		
남구	42	2014-04-04	○○동 24-17	분할식	2014-04-10	1		정산소홀
남구	43	2014-04-07	구룡포읍 ○○○리 286	구획	2014-04-11	1		
남구	44	2014-04-07	○○동 483	구획	2014-04-10	4		
남구	45	2014-04-08	○○동 46-21	구획	2014-04-11	1		
남구	46	2014-04-11	구룡포읍 ○○리 157-169	구획	2014-04-16	1		
남구	47	2014-04-11	○○동 229-42	구획	2014-04-17	1		
남구	48	2014-04-14	구룡포읍 ○○리 371-1	구획	2014-04-16	2		
남구	54	2014-05-06	호미곶면 ○○리 778-1	구획	2014-05-20	2		
남구	57	2014-05-07	○○동 254-329	분할식	2014-05-21	1		정산소홀
남구	58	2014-05-08	구룡포읍 ○○○리 708-32	분할식	2014-05-19	3		정산소홀
남구	59	2014-05-13	동해면 ○○리 240	구획	2014-05-28	1		
남구	61	2014-05-14	구룡포읍 ○○리 540	구획	2014-05-23	1		
남구	62	2014-05-20	장기면 ○○리 360	구획	2014-05-30	1		
남구	64	2014-05-26	구룡포읍 ○○리 58-1	구획	2014-06-03	1		
남구	66	2014-05-28	○○동 589-4	구획	2014-06-12	1		
남구	69	2014-06-03	○○동 18-165	선	2014-06-11	1		정산소홀
남구	71	2014-06-05	구룡포읍 ○○리 148-1	구획	2014-06-17	1		
남구	73	2014-06-10	장기면 ○○리 산62-3	구획	2014-06-20	2		
남구	75	2014-06-16	장기면 ○○리 386-1	구획	2014-06-25	1		
남구	78	2014-06-24	대송면 ○○리 451	구획	2014-07-01	1		
남구	79	2014-07-04	○○동 254-329	구획	2014-07-07	1		
남구	82	2014-07-15	연일읍 ○○리 310-8	구획, 선	2014-07-21	2		정산소홀
남구	83	2014-07-15	장기면 ○○리 2-1	구획	2014-07-21	1		
남구	84	2014-07-21	○○동 161-1	구획	2014-07-28	1		
남구	87	2014-07-29	동해면 ○○리 248-1	구획	2014-08-04	1		
남구	88	2014-08-05	호미곶면 ○○리 15	구획	2014-08-08	1		
남구	89	2014-08-12	구룡포읍 ○○리 386	구획	2014-08-19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남구	90	2014-08-12	○○동 780-141	구획	2014-08-21	1		
남구	93	2014-08-19	호미곶면 ○○리 202-4	구획	2014-08-26	1		
남구	97	2014-08-25	구룡포읍 ○○리 582-6	구획	2014-09-01	1		
남구	98	2014-08-25	구룡포읍 ○○리 587	구획	2014-09-01	1		
남구	99	2014-08-25	구룡포읍 ○○리 591	구획	2014-09-01	1		
남구	100	2014-08-25	구룡포읍 ○○리 592-1	구획	2014-09-01	1		
남구	101	2014-08-25	구룡포읍 ○○리 570	구획	2014-09-01	1		
남구	103	2014-08-25	구룡포읍 ○○리 598-1	구획	2014-09-01	1		
남구	104	2014-08-25	○○동 3-63	구획	2014-08-28	1		
남구	106	2014-08-29	○○동 3-173	구획	2014-09-04	1		
남구	107	2014-09-02	구룡포읍 ○○리 370-25	구획	2014-09-05	1		
남구	108	2014-09-11	연일읍 ○○리 599	구획	2014-09-29	1		
남구	116	2014-09-29	동해면 ○○리 662-2	구획	2014-10-06	2		
남구	120	2014-10-06	구룡포읍 ○○리 157-275	구획	2014-10-14	1		
남구	123	2014-10-16	구룡포읍 ○○리 33-3	구획	2014-10-29	1		
남구	124	2014-10-20	○○동 254-325	구획	2014-10-29	2		
남구	125	2014-10-21	오천읍 ○○리 446	구획	2014-10-30	1		
남구	126	2014-10-21	○○동 900-4	구획	2014-10-22	2		
남구	127	2014-10-21	호미곶면 ○○리 860-1	구획	2014-11-04	1		
남구	128	2014-10-23	○○동 154-3	구획	2014-11-04	1		
남구	129	2014-10-24	장기면 ○○리 538-1	구획	2014-11-06	1		
남구	130	2014-10-27	구룡포읍 ○○리 144	구획	2014-11-05	1		
남구	131	2014-10-27	구룡포읍 ○○리 215	구획	2014-11-05	1		
남구	132	2014-10-27	구룡포읍 ○○리 219	구획	2014-11-05	1		
남구	133	2014-10-27	장기면 ○○리 8-1	구획	2014-11-10	4		
남구	134	2014-10-27	장기면 ○○리 8-2	구획	2014-11-10	1		
남구	135	2014-10-28	연일읍 ○○리 175-1	구획	2014-11-07	2		
남구	138	2014-11-10	장기면 ○○리 523-2	구획	2014-11-19	2		
남구	139	2014-11-13	구룡포읍 ○○리 35-5	구획	2014-11-20	2		
남구	140	2014-11-13	○○동 458	구획	2014-11-18	1		
남구	141	2014-11-14	구룡포읍 ○○리 190-64	구획	2014-11-26	1		
남구	142	2014-11-19	○○동 792-1	구획	2014-11-27	3		
남구	144	2014-11-25	호미곶면 ○○리 238-2	구획	2014-12-05	1		
남구	145	2014-12-01	구룡포읍 ○○리 406-6	구획	2014-12-09	1		
남구	146	2014-12-01	○○동 1-304	구획	2014-12-08	1		
남구	147	2014-12-01	구룡포읍 ○○리 395-8	구획	2014-12-09	1		
남구	148	2014-12-02	구룡포읍 ○○리 210	구획	2014-12-09	1		
남구	149	2014-12-05	구룡포읍 ○○리 219-5	구획	2014-12-11	1		
남구	150	2014-12-05	○○동 8-3	구획	2014-12-10	1		
남구	151	2014-12-08	구룡포읍 ○○리 768	구획	2014-12-10	1		
남구	152	2014-12-08	○○동 314	구획	2014-12-12	1		
남구	154	2014-12-10	장기면 ○○리 산51-3	구획	2014-12-15	1		
남구	155	2014-12-11	○○동 54-8	구획	2014-12-16	1		
남구	156	2014-12-12	구룡포읍 ○○리 110	구획	2014-12-18	2		
남구	157	2014-12-16	오천읍 ○○리 10-246	구획	2014-12-23	1		
남구	158	2014-12-19	동해면 ○○리 72-2	구획	2014-12-30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북구	12	2014-01-20	홍해읍 ○○리 409-1	구획	2014-01-24	1		
북구	15	2014-01-24	○○동 142-6	구획	2014-02-04	1		
북구	17	2014-02-06	청하면 ○○리 424	구획	2014-02-06	2		
북구	23	2014-02-26	홍해읍 ○○리 162-2	구획	2014-03-06	1		
북구	29	2014-03-06	기계면 ○○리 472-1	구획	2014-03-17	2		
북구	30	2014-03-06	기계면 ○○리 (1099-1)	구획	2014-03-12	1		
북구	31	2014-03-07	청하면 ○○리 217	구획	2014-03-19	2		
북구	33	2014-03-10	기계면 ○○리 (483-28)	구획	2014-03-12	1		
북구	54	2014-04-11	신광면 ○○리 104	구획	2014-04-21	2		
북구	57	2014-04-16	○○동 580-10	구획	2014-04-23	1		
북구	65	2014-05-02	송라면 ○○리 42	구획	2014-05-16	2		
북구	66	2014-05-07	홍해읍 ○○리 986-1	구획	2014-05-16	1		
북구	67	2014-05-07	청하면 ○○리 583-16	구획	2014-05-15	1		
북구	70	2014-05-15	홍해읍 ○○리 410-3	구획	2014-05-20	1		
북구	71	2014-05-15	청하면 ○○리 559-57	구획	2014-05-21	3		
북구	72	2014-05-19	청하면 ○○리 242	구획	2014-05-27	1		
북구	74	2014-05-22	기계면 ○○리 197	구획	2014-05-28	3		
북구	75	2014-05-22	○○2가 144-2	구획	2014-05-28	1		
북구	80	2014-05-26	기계면 ○○리 477-1	구획	2014-05-29	1		
북구	84	2014-05-29	청하면 ○○리 44	구획	2014-06-10	2		
북구	91	2014-06-11	○○2가 136-24	구획	2014-06-19	3		
북구	94	2014-06-20	홍해읍 ○○리 48-2	구획	2014-06-25	2		
북구	98	2014-06-24	홍해읍 ○○리 598-1	구획	2014-06-26	1		
북구	101	2014-06-26	○○동 44-4	구획	2014-06-27	1		
북구	104	2014-06-27	홍해읍 ○○리 36-4	분할식	2014-06-27	2		정산소홀
북구	106	2014-07-03	기계면 ○○리 782	구획	2014-07-07	4		
북구	110	2014-07-07	송라면 ○○리 610	구획	2014-07-08	4		
북구	114	2014-07-10	○○동 625-13	구획	2014-07-17	1		
북구	115	2014-07-10	홍해읍 ○○리 613-15	구획	2014-07-17	1		
북구	118	2014-07-18	홍해읍 ○○리 (420)	구획	2014-07-25	2		
북구	120	2014-07-22	○○2가 136-24	구획	2014-08-08	1		
북구	129	2014-07-30	기북면 ○○리 432	구획	2014-08-01	1		
북구	132	2014-07-30	청하면 ○○리 563-1	구획	2014-08-06	1		
북구	136	2014-08-08	청하면 ○○리 67	분할식	2014-08-12	2		정산소홀
북구	137	2014-08-12	신광면 ○○리 394-1	구획	2014-08-21	2		
북구	140	2014-08-14	청하면 ○○리 438-1	구획	2014-08-19	1		
북구	143	2014-08-21	홍해읍 ○○리 산92-8	구획	2014-09-01	2		
북구	147	2014-08-28	홍해읍 ○○리 392	구획	2014-09-03	1		
북구	148	2014-08-29	기계면 ○○리 584	구획	2014-09-04	2		
북구	149	2014-09-01	○○동 996-3	구획	2014-09-03	1		
북구	154	2014-09-18	죽장면 ○○리 139-1	구획	2014-09-25	1		
북구	157	2014-10-01	신광면 ○○리 705-34	분할식, 구획	2014-10-01	1		
북구	160	2014-10-06	송라면 ○○리 24-5	구획	2014-10-17	1		
북구	162	2014-10-06	청하면 ○○리 241-5	분할식	2014-10-08	1		정산소홀
북구	165	2014-10-16	기계면 ○○리 589	구획	2014-10-28	1		
북구	166	2014-10-20	○○동 54-4	구획	2014-11-13	1		
북구	177	2014-11-05	○○동 72-2	구획	2014-11-11	1		
북구	179	2014-11-06	청하면 ○○리 215	구획	2014-11-14	1		
북구	188	2014-11-18	○○동 645-14	구획	2014-11-25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북구	192	2014-11-19	홍해읍 ○○리 296	구획	2014-11-27	1		
북구	193	2014-11-20	기계면 ○○리 456-1	분할식	2014-11-24	1		정산소출
북구	194	2014-11-20	홍해읍 ○○리 694	구획	2014-11-26	2		
북구	195	2014-11-21	○○동 25	구획	2014-11-27	1		
북구	196	2014-11-25	○○동 120-20	구획	2014-11-28	1		
북구	199	2014-11-25	○○동 210-38	구획	2014-11-28	1		
북구	202	2014-11-28	홍해읍 ○○리 296	구획	2014-12-02	1		
북구	203	2014-12-02	송라면 ○○리 329-12	구획	2014-12-09	1		
북구	204	2014-12-02	홍해읍 ○○리 693	구획	2014-12-03	3		
북구	211	2014-12-12	○○동 829	구획	2014-12-18	1		

['15년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일부 발취 세부 현황(○○지사)]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남구	1	2015-01-01	○○동 254-166	구획	2015-01-02	2		
남구	5	2015-01-02	연일읍 ○○리 75-3	구획	2015-01-07	1		
남구	6	2015-01-15	구룡포읍 ○○리 721-1	구획	2015-01-21	2		
남구	15	2015-02-12	○○동 375-20	구획	2015-02-27	2		
남구	22	2015-03-12	장기면 ○○리 산177-1	구획	2015-03-24	1		
남구	33	2015-04-17	구룡포읍 ○○리 1092	구획	2015-04-28	2		
남구	34	2015-04-22	동해면 ○○리 607	구획	2015-05-08	1		
남구	42	2015-05-26	연일읍 ○○리 456	구획	2015-06-09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북구	6	2015-01-01	죽장면 ○○리 994	구획	2015-01-07	1		
북구	7	2015-01-01	홍해읍 ○○리 665	구획	2015-01-07	1		
북구	11	2015-01-08	기계면 ○○리 338-1	구획	2015-01-14	1		
북구	12	2015-01-08	○○동 499-3	구획	2015-01-14	2		
북구	15	2015-01-20	송라면 ○○리 622	구획	2015-01-23	1		
북구	17	2015-01-28	청하면 ○○리 427-1	구획	2015-02-02	1		
북구	25	2015-02-25	청하면 ○○리 514	구획	2015-03-04	2		
북구	30	2015-02-26	기북면 ○○리 292	구획	2015-03-06	3		
북구	31	2015-02-26	○○동 135	구획	2015-03-05	1		
북구	36	2015-03-04	죽장면 ○○리 300-1	구획	2015-03-11	1		
북구	55	2015-04-03	신광면 ○○리 581-1	구획	2015-04-15	1		
북구	59	2015-04-07	기북면 ○○리 380	구획	2015-04-16	1		
북구	65	2015-04-15	○○동 384-3	구획	2015-04-28	1		
북구	72	2015-04-20	홍해읍 ○○리 188	구획	2015-04-27	1		
북구	77	2015-04-27	○○동 434	구획	2015-05-11	1		
북구	78	2015-04-27	죽장면 ○○리 278-2	구획	2015-05-12	2		
북구	79	2015-04-28	기계면 ○○리 477-2	구획	2015-05-12	2		
북구	80	2015-04-30	홍해읍 ○○리 367-2	구획	2015-04-30	1		
북구	89	2015-06-05	기계면 ○○리 539-1	구획	2015-06-23	1		

[붙임 2]

['14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누락 일부 발취(지사)]

소관청	종 목	접수일자	측량일자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원면적	공차	오차	증감	측량팀장
남구	등록전환	2014-01-07	2014-01-15	1	오천읍 ○○리 산280	○	×	×	×	
		2014-01-13	2014-01-21	2	장기면 ○○리 산259-5	○	○	○	×	
		2014-01-15	2014-01-21	3	연일읍 ○○리 산44-6	×	×	×	○	
		2014-01-28	2014-02-18	4	대송면 ○○리 산51	○	○	○	○	
		2014-02-03	2014-02-18	5	대송면 ○○리 산51-5	○	○	○	×	
		2014-02-12	2014-02-20	6	구룡포읍 ○○리 산176-22	○	×	×	×	
		2014-03-04	2014-03-12	7	연일읍 ○○리 (산27-10)	○	○	○	×	
		2014-03-07	2014-03-18	8	오천읍 ○○리 산128-8	○	○	○	×	
		2014-03-11	2014-03-24	9	오천읍 ○○리 산28-1	○	○	○	×	
		2014-03-13	2014-03-26	10	장기면 ○○리 산66-3	○	×	×	○	
		2014-03-18	2014-03-26	11	장기면 ○○리 산66	○	○	○	×	
		2014-03-20	2014-04-01	12	구룡포읍 ○○리 산13	×	×	×	×	
		2014-04-23	2014-05-23	13	장기면 ○○리 산37	○	○	○	○	
		2014-06-27	2014-07-01	14	○동 산102-1	○	×	×	×	
북구	등록전환	2014-09-16	2014-09-25	15	○○동 산50	○	○	○	×	
		2014-09-16	2014-09-30	16	○동 산29-1	○	×	×	○	
		2014-01-17	2014-01-23	2	홍해읍 ○○리 산102-1	○	×	×	○	
		2014-01-20	2014-02-24	3	홍해읍 ○○리 산12-1	○	○	○	×	
		2014-02-26	2014-03-03	4	○○동 산143	○	×	×	○	
		2014-03-06	2014-07-31	6	○○동 (산79-18)	○	×	×	×	
		2014-03-07	2014-03-19	7	청하면 ○○리 산21-1	○	○	○	×	
		2014-05-08	2014-05-13	8	홍해읍 ○○리 산174-3	○	○	○	×	
		2014-06-19	2014-06-25	9	홍해읍 ○○리 산45-13	○	○	×	○	
		2014-07-09	2014-07-16	10	송라면 ○○리 산20-1	○	○	×	○	
		2014-07-15	2014-07-15	11	○○동 산1	○	×	×	○	
		2014-07-16	2014-07-21	12	홍해읍 ○○리 산33	○	○	○	×	
		2014-07-23	2014-07-29	13	홍해읍 ○○리 산45-6	○	×	×	×	
		2014-08-01	2014-08-08	14	홍해읍 ○○리 산39-9	○	×	×	×	
		2014-08-12	2014-09-05	15	○○성동 산257	○	○	×	○	
		2014-08-13	2014-08-21	16	○○동 산56-21	○	○	○	×	
		2014-08-20	2014-08-26	17	○○동 산41-4	○	×	×	○	
		2014-09-03	2014-09-05	18	청하면 ○○리 산2	×	×	×	○	
		2014-09-29	2014-10-15	19	○○동 산94	○	×	×	○	
		2014-09-30	2014-10-02	20	홍해읍 ○○리 산92-15	○	×	×	○	
		2014-10-08	2014-10-20	21	신광면 ○○리 산53-13	○	×	×	○	
		2014-11-25	2014-11-27	22	송라면 ○○리 (산9-1)	○	×	×	×	
		2014-11-27	2014-12-02	23	홍해읍 ○○리 산48-2	○	○	×	○	

['15년 등록전환 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누락 일부 발취(○○지사) 6월 현재]

소관청	종 목	접수일자	측량일자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원면적	공차	오차	증감	측량팀장
남구	등록전환	2015-01-05	2015-01-29	1	대송면 ○○리 산151	○	×	×	×	
		2015-01-22	2015-01-27	2	동해면 ○○리 산168	×	×	×	×	
		2015-04-20	2015-05-07	4	호미곶면 ○○리 산62-1	○	×	×	○	
		2015-04-28	2015-04-30	5	구룡포읍 ○○리 산113-29	○	×	×	○	
		2015-05-08	2015-06-09	7	오천읍 ○○리 산36-1	○	×	×	×	
북구	등록전환	2015-01-08	2015-01-15	2	죽장면 ○○리 산95	×	×	×	○	
		2015-01-12	2015-01-16	3	신광면 ○○리 산94-4	○	×	×	×	
		2015-04-08	2015-04-13	6	죽장면 ○○리 산77-7	○	×	×	×	
		2015-04-14	2015-04-20	7	○○동 산79-11	○	×	×	○	
		2015-04-17	2015-04-29	8	○○동 산125-7	○	×	×	○	
2015-05-12	2015-05-26	12	송라면 ○○리 산217-10	○	×	×	○			
2015-05-27	2015-06-09	15	홍해읍 ○○리 산63-1	×	×	×	○			

감 사 통 보

제 목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014년도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무성적평정 실시(○○부-5968: 2014.11.20.)에 따른 2014 직원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 _ III. 3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일반직원) _ 5.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요령 _ 바. 가감점 평가에 따라“ 민원발생 감점은 각 건별로 해당 감점을 기재하되 성과정정 민원 발생분이며, 민원발생 감점대상자 선정은 본사, 본부 및 지사에 접수되고,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함. 1~2건: -1.0, 3~4건: -2.0, 5건 이상: -3.0” 고 되어 있다.

또한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6조(운영)에 따라 “공사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지침 제5조, 제6조,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른 민원과 관련 된 사항을 등록·관리” 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39조(등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40조(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이관) 및 제41조(시스템 모니터링)에 따라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민원업무 처리 가감점 처리 대상 22건 중 2건은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에 등록 되지 않았고, 3건은 등록된 자료 중 ‘성과동일’을 ‘성과정정’으로 착오 입력하는 등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의 민원 가감점이 적정하지 않게 평정 되었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에 명시된 가감점 평가 및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근무평정에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민원업무 처리 CRM 미등록 및 등록오류 현황]

민원번호	접수일자	민원내용	CRM 처리결과 등록오류		확인 측량자			건수	가산점 적용 오류		비고
			오	경	소속	외급	성명		오	경	
2014-001195	2014-11-13	김○○ 구미시 선산읍 ○○리 138- 5	성과동일	미등록	○지사	3급		2	-	-	
2014-000478	2014-04-26	유○○ 구미시 ○○동 176	성과동일	미등록	○지사	3급					
2014-000677	2014-06-12	이○○ 상주시 화동면 ○○리 709- 3	성과정정	성과동일	○지사	4급		1	-1	0	본인처리
2014-000706	2014-06-18	김○○ 청송군 진보면 ○○리 127- 15	성과정정	성과동일	○지사	4급		1	-1	0	본인처리
2014-001180	2014-11-05	이○○ 경주시 천북면 ○○리 95	성과정정	성과동일	○지사	4급		1	-1	0	본인처리

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교육훈련여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육훈련여비)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의 지급기준은 “비합숙으로 근무지 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일비 지급은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며 기타일은 여비규정상 일비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종합감사에서 ○○지사, ○○지사, ○○지사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본부에서 실시한 직장교육 여비지급을 조사한 결과, 붙임 1과 같이 기타일에 대하여 여비규정상 일비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등 규정 준수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교육훈련 여비 28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훈련 여비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원)

소속	직급·성명	과정명	교육기간(일)	기지급액 (일비)	요지급액 (일비)	차액
○○지사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3.09.25. ~ 09.27.(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기초측량)	2014.09.17. ~ 09.19.(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4.09.24. ~ 09.26.(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4.09.24. ~ 09.26.(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기초측량)	2015.02.25. ~ 02.27.(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확정측량)	2015.03.04. ~ 03.06.(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5.06.08. ~ 0.6.10.(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5.06.08. ~ 0.6.10.(3일)	60,000	50,000	10,000
○○지사	4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3.08.19. ~ 08.21.(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3.09.25. ~ 09.27.(3일)	60,000	50,000	10,000
	7급 ○○○		60,000	50,000	10,000	
	6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기초측량)	2014.09.17. ~ 09.19.(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4.09.24. ~ 09.26.(3일)	60,000	50,000	10,000
	4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확정측량)	2015.03.04. ~ 03.06.(3일)	60,000	50,000	10,000
6급 ○○○	60,000		50,000	10,000		
○○지사	7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3.08.19. ~ 08.21.(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3.09.25. ~ 09.27.(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등)	2014.08.25. ~ 08.28.(4일)	80,000	60,000	2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등)	2014.09.15. ~ 09.18.(4일)	80,000	60,000	2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기초측량)	2014.09.17. ~ 09.19.(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4.09.24. ~ 09.26.(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공간정보)	2014.09.24. ~ 09.26.(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기초측량)	2015.02.25. ~ 02.27.(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확정측량)	2015.03.04. ~ 03.06.(3일)	60,000	50,000	10,000
	5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5.06.08. ~ 0.6.10.(3일)	60,000	50,000	10,000
7급 ○○○	본부 직장교육 (지적측량시스템)	2015.06.08. ~ 0.6.10.(3일)	60,000	50,000	10,000	
합 계				1,600,000	1,320,000	280,000

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지사, ○○지사, ○○지사

내 용

「여비규정」 제13조(여비지급의 예외) 제1항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일 출장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규정 제3조 제2항 이외의 업무로 공사차량 및 임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부임여비 등) 제1항에는 “시·군을 달리하여 전근 또는 3개월 이상 파견근무 명령으로 부임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정액여비와 가족여비 및 이전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사 업무지원을 위해 3개월 미만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부임여비로 식비 등의 정액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날에는 일비와 식비를 중복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붙임1> 현황과 같이 3개월 미만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원에게 부임여비로 식비 등의 정액여비를 지급하였고, 같은 날에 일비와 식비를 중복 지급하는 등 여비교통비 1,55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하게 지급된 여비교통비 1,555,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교통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건근무명령에 따른 부임여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원)

지출일	과건근무 명령			부임여비 집행			과 다 지금액	비 고
	과건지	과건기간	대상자	운임	일비	식비		
2014. 2.20.	○○지사	2.17.~ 3. 4.	○○○	0	20,000	20,000	40,000	과건지 일비지급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2.25.	○○지사	2.24.~ 3. 4.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3.13.	○○지사	3.10.~ 3.19.	○○○	15,600	20,000	25,000	25,000	
2014. 3.13.	○○지사	3.10.~ 3.14.	○○○	0	0	20,000	20,000	
			○○○	6,700	20,000	20,000	20,000	
			○○○	6,700	20,000	20,000	20,000	
2014. 3.13.	○○지사	3.10.~ 3.14.	○○○	0	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4. 2.	○○지사	4. 2.~ 4.18	○○○	2,900	20,00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4. 4. 2.	○○지사	4. 2.~ 4.11.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4. 2.	○○지사	4. 2.~ 4.18.	○○○	10,000	20,00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4. 4.18.	○○지사	4.14.~ 4.25.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4.24.	○○지사	4.24.~ 4.30.	○○○	0	0	20,000	20,000	
			○○○	7,400	20,000	20,000	20,000	
2014. 5.20.	○○지사	5.12.~ 5.15.	○○○	0	20,000	20,000	40,000	과건지 일비지급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5.27.	○○지사	5.26.~ 5.29.	○○○	4,600	20,000	20,000	20,000	
			○○○	4,600	20,000	20,000	20,000	
2014. 6. 9.	○○지사	6. 9.~ 6.19.	○○○	2,600	20,000	20,000	20,000	
2014. 6. 9.	○○지사	6. 9.~ 6.19.	○○○	0	20,000	20,000	40,000	과건지 일비지급

지출일	과건근무 명령			부임여비 집행			과 다 지금액	비 고
	과건지	과건기간	대상자	운임	일비	식비		
2014. 7.29.	○○지사	7.28.~ 8. 1.	○○○	0	20,000	20,000	40,000	과건지 일비지급
			○○○	5,700	20,000	20,000	20,000	
			○○○	5,700	20,000	20,000	20,000	
2014. 9. 4.	○○지사	9. 2.~ 9. 4.	○○○	7,000	20,000	20,000	20,000	과건지 식비지급
			○○○	7,000	20,000	20,000	20,000	과건지 식비지급
2014. 10.20.	○○지사	10.13.~10.17.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4. 10.27.	○○지사	9.29.~10. 7.	○○○	2,600	20,000	25,000	25,000	
			○○○	0	20,000	25,000	25,000	
2014. 10.27.	○○지사	10.13.~10.24.	○○○	0	20,000	25,000	25,000	
			○○○	2,600	20,000	25,000	25,000	
2014. 11. 3.	○○지사	10.20.~10.24.	○○○	0	0	20,000	20,000	
			○○○	6,800	0	20,000	20,000	
			○○○	6,800	0	20,000	20,000	
2015. 1.23.	○○지사	1.12.~ 1.16.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5. 3.31.	○○지사	3.18.~ 3.20.	○○○	0	20,00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5. 3.31.	○○지사	3.18.~ 3.24.	○○○	0	20,000	20,000	20,000	
2015. 4. 6.	○○지사	4. 6.~ 4.10.	○○○	0	0	20,000	20,000	
			○○○	0	20,000	20,000	20,000	
			○○○	0	20,000	20,000	20,000	
본부 계							1,145,000	
2014. 7. 9.	○○지사	7. 9.~ 7,11,	○○○	0	20,000	20,000	20,000	
2014. 7.28.	○○지사	7.28.~ 8. 1.	○○○	0	20,000	20,000	20,000	
지사 계							40,000	

지출일	과건근무 명령			부임여비 집행			과 다 지금액	비 고
	과건지	과건기간	대상자	운임	일비	식비		
2014. 7.25.	○○지사 (귀임)	7.14.~ 7.25.	○○○	4,600	20,000	20,000	40,000	과건지 일비지급
2015. 5.25.	○○지사	5.26.~ 5.29.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지사 계							100,000	
2013. 9.13.	○○지사 (귀임)	9. 5.~ 9.13.	○○○	0	0	20,000	20,000	
			○○○	18,800	0	20,000	20,000	
			○○○	18,800	0	20,000	20,000	
2014. 1.17.	○○지사 (귀임)	1.13.~1.17.	○○○	0	0	20,000	20,000	
			○○○	12,900	0	20,000	20,000	
			○○○	12,900	0	20,000	20,000	
2014. 1.24.	○○지사 (귀임)	1.20.~1.24.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4. 10.20.	○○지사	10.20.~10.31.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	0	0	20,000	20,000	
2014. 11.10.	○○지사	11.10.~11.21.	○○○	0	10,000		10,000	과건지 일비지급
			○○○	0	10,000		10,000	과건지 일비지급
			○○○	0	10,000		10,000	과건지 일비지급
지사 계							270,000	
합 계							1,555,000	

감 사 통 보

제 목 회의비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재무규정」 제20조(지출) 제1항에는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를 받은 후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투명한 회계처리)에는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 밖에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예산집행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회의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참석 명단, 회의 내용 등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래 현황과 같이 유관기관 회의 등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명단, 회의 관련내용 등 기본적인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락한 채 공사 예산으로 회의비를 집행하였다.

[회의비 집행 및 증빙서류 누락 현황]

(금액단위: 원)

지출일	집행액	회의목적	증빙서류 누락	비 고
2014. 1. 8.	213,000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관련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 2. 4.	444,000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 3.10.	2,432,000	지적발전 간담회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 4.29.	89,000	소그룹 연구활동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 5.29.	2,432,000	지적발전 간담회	참석자명단	
2014. 7.10.	2,432,000	지적발전 간담회	참석자명단	
2014. 8.21.	242,000	비상임이사 등 간담회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 9.17.	950,000	지적발전 간담회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11. 4.	465,000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11.11.	2,432,000	지적발전 간담회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12.23.	250,000	담당관 직무업무 회의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2014.12.30.	250,000	본부 운영계획 수립 워크숍	참석자명단, 회의관련내용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회의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참석자 명단, 회의관련내용 등의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추는 등 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시정요구(지급, 회수)

제 목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호봉 확정 및 승급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인사규정」 제20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승진임용 되는 직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규정」 제19조 (승급의 제한) 제2항 제1호에 “「같은 규정」 제17조(정기승급) 제1항의 근무기간 계산에서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징계 받은 직원에 대한 호봉 확정 및 승급 현황]

부서명	직·성명	징계명	징계일	징계전 승급일(호봉)	승급일 (호봉)	승급(정)	비 고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감봉1	2014.03.25	2014.01.01. (17)	2015.02.01. (18)	2016.02.01. (18)	2016.05.01(19)잔여4 2017.01.01.(20) 예정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견책	2014.03.25	2014.02.01. (10)	2015.02.01. (11)	2015.08.01. (11)	2016.02.01.(12) 예정
○○지사	국토정보직 3급 ○○○	정직1	2014.01.21	2013.06.01. (27)	2015.05.01. (29)	2014.01.01. (28)	3급 28호(최고호봉)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감봉2	2014.05.09	2013.05.01. (17)	2015.05.01. (19)	2015.10.01. (18)	

또한, 「급여규정」 제20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같은 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근무기간계산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강등·정직

3년, 감봉 2년, 견책 1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급기간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호봉을 승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승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호봉 확정 및 승급을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호봉 확정 및 승급 발령 착오로 인한 인건비는 정산 후 지급 및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봉 확정 및 승급발령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유 부동산의 화재예방 등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효율적 방화관리에 관한 소방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관리책임자(본부, 지사: 본부장)는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난 7월 2일 14:00 본부 화재발생을 가상하여 소방 모의훈련 점검 결과 총괄 책임자인 본부장을 중심으로 119에 가상 화재신고와 함께 옥내 방송을 통한 화재경보를 발령하고 사옥외로 긴급대피, 소화전 및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 안전 구조요청, 응급환자 이송 등 4월 22일 성서소방서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년 소방계획서 조직은 통보 연락반, 소화반, 피난 유도반, 응급 구조반으로 편성하여 화재 및 재난 대응에는 적극적이거나 조직·개인별 주어진 임무는 명확하지 않았다. 중요 문서 및 중요 측량장비 반출에서 중요물품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미진하였다. 또한 2015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연1회로 강화되어 2014년 상반기 종합정밀 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 국가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의 안전에 대비하고자 화재예방, 재난사고 방지, 교통법규준수, 응급처치 등 관리 및 교육이 더욱 강조 시 되고 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 업무 등을 강화하여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인 훈련 연습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 사무분장에 편재하여 위기대응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또한, 향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본사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소산훈련 계획²⁾도 아울러 수립하여 개인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임무카드인 전시임무 및 주요조치카드 등을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로 안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산훈련 계획도 아울러 수립하여 개인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임무 카드를 비치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산훈련이란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인력과 중요장비를 분산 배치해 포탄이나 공습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행동이며 율지연습 일환으로 중요문서, 측량장비 등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이다.

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종목변경에 따른 업무(종목변경 의뢰서 작성)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시행규칙」제19조(접수 및 정산) 제2항에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고,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하며, 종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추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한 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입금표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측량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고, 변경된 측량종목의 측량의뢰서를 출력하여 지적측량신청서철에 편철 보관하여 변경된 업무처리과정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2014년도 지적측량업무처리를 하면서 위 현황과 같이 종목변경 처리를 한 18건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출력하여 지적측량신청서철에 편철 보관하여야 하는 종목변경에 따른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보관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종목변경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지적측량 종목변경 현황]

구분	접 수			종목변경 현황			토지소재지	측량자 (정산)	비고
	일자	종목	번호	일자	종목	번호			
1	2014.01.10	분할측량	22	2014.01.10	지적현황	7	기계면 ○○리 산109번지		
2	2014.02.06	경계복원	52	2014.02.06	지적현황	17	청하면 ○○리 424번지		
3	2014.04.02	경계복원	236	2014.04.02	지적현황	51	홍해읍 ○○리 116번지		
4	2014.04.24	경계복원	308	2014.04.24	지적현황	62	○○동 224번지		
5	2014.05.08	경계복원	265	2014.05.08	지적현황	56	오천읍 ○○리 268-3번지		
6	2014.05.26	분할측량	272	2014.05.26	지적현황	79	신광면 ○○리 120-3번지		
7	2014.05.28	지적현황	60	2014.05.28	분할측량	217	연일읍 ○○리 90-41번지		
8	2014.05.30	경계복원	441	2014.05.30	지적현황	85	죽장면 ○○리 845번지		
9	2014.06.23	분할측량	241	2014.06.23	지적현황	77	○○동 229-248번지		
10	2014.07.11	지적현황	113	2014.07.11	경계복원	573	홍해읍 ○○리 228-6번지		
11	2014.07.17	분할측량	375	2014.07.17	등록전환	11	○○호동 산1번지		
12	2014.08.05	경계복원	597	2014.08.05	지적현황	134	○○동 560-29번지		
13	2014.08.13	분할측량	427	2014.08.13	지적현황	138	신광면 ○리 산85-1번지		
14	2014.10.01	분할측량	483	2014.10.01	지적현황	157	신광면 ○○리 705-36번지		
15	2014.10.01	분할측량	380	2014.10.01	지적현황	119	구룡포읍 ○○리 632번지		
16	2014.11.03	지적현황	174	2014.11.03	분할측량	562	○○동 333-7번지		
17	2014.11.12	경계복원	880	2014.11.12	지적현황	184	홍해읍 ○○리 10-2번지		
18	2014.11.20	경계복원	919	2014.11.20	지적현황	201	홍해읍 ○○리 392번지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종목 변경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시정요구(추징)

제 목 지적현황측량 업무처리(수수료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1(지적현황측량)가.1)⑦에 「인·허가 선이나 도시계획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황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측량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의 30퍼센트를 가산 적용하여야 한다.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착오 적용 현황]

(금액단위: 원)

소관청	접수일	종목 (번호)	토지 구분	토지소재지	정산내역(부가세포함)						측량자 (정산)	
					오			정				차액
					적요	수량	금액	적요	수량	금액		
북구	2014-03-14	지적현황(37)	토지	홍해읍 ○○리 805	100%	3	763,400	130%	2	711,700	169,400	
								100%	1	221,100		
북구	2014-07-07	지적현황(107)	토지	신광면 ○○리 199-1	100%	2	442,200	130%	2	574,200	132,000	
북구	2014-07-07	지적현황(111)	토지	송라면 ○○리 90	100%	2	446,600	130%	2	579,700	133,100	
북구	2014-10-21	지적현황(167)	토지	○○동 312	100%	4	1,190,200	130%	4	1,513,600	323,400	
	계	6건				11	2,842,400		11	3,600,300	757,900	

그런데도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현황선을 도

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의 130퍼센트를 적용하지 않고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측량수수료(757,900원)를 착오(과소)수입하는 등 지적현황측량 수수료적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소하게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 757,900원을 추징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로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본사 ○○처에서는 SIMC에 건물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국가 시스템 연계·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4. 1. 20.부터 접수된 건물현황측량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를 구조화하여 MOS에 GDB파일을 업로드하고 SIMC에 구축하도록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부-181: 2014. 1. 15.)” 시행취지와 매뉴얼을 시달하였다.

또한 본부 ○○처 및 ○○처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서 지시를 시달하였으며, 특히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연계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계획」에 따른 ‘15년 1분기 본부실적이 28.6%(전국 55.2%)이며, 포항지사는 실적이 0%로 저조하니 건물공간정보 구축 매뉴얼을 참고하여 직원 역량강화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계획 문서 지시 현황]

시행기관	문서제목	문서번호	시행일자
○○○○지역본부 ○○처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	○○처-704	2014. 1. 16.
	‘14년 1분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3695	2014. 4.30.
	‘14년 상반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6188	2014. 7.17.
	‘14년 11월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10145	2014. 2. 9.
○○○○지역본부 ○○처	‘15년 1분기 건물공간정보 구축 실적 알림	○○처-314	2015. 4.10.
	건물공간정보 구축 업무 철지	○○처-644	2015. 6.10.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현황]

구 분	지적현황(건물, 구획) 접수건수(A)	건물 공간정보 등록건수(B)	건물 공간정보 미등록건수(C)	비 율(%)		비 고
				A:B	A:C	
계	201	28	173	13.9	86.1	
2014	169	23	146	13.6	86.4	정산소홀 (10건)
2015 (6. 23. 현재)	32	5	27	15.6	84.4	-

※ [붙임] 2014년, 2015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세부 현황

그런데도 2014. 1. 20. 접수건 부터 2015. 6. 23. 현재까지 위 현황과 같이 2014년 접수건수 169건 중 146건(86.4%), 2015년 접수건수 32건 중 27건(84.4%), 2개년 총 접수건수 201건 중 173건(86.1%)에 대하여 건물공간정보가 구축된 GDB파일을 MOS에 업로드 하지 않았으며 이 중 10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정부3.0 협업기반 건물공간정보 구축 추진” 시행 취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공간정보 구조화 및 정산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세부 현황]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담당	비고
남구	11	2014-01-24	○○동 170-11	구획	2014-01-27	1		
남구	17	2014-02-10	호미곶면 ○○리 886-14	구획	2014-02-20	1		
남구	18	2014-02-17	연일읍 ○○리 75-3	구획	2014-02-28	2		
남구	19	2014-02-20	호미곶면 ○○리 886-73	구획	2014-03-05	1		
남구	23	2014-03-05	연일읍 ○○리 (731-2)	구획	2014-03-14	1		
남구	27	2014-03-07	호미곶면 ○○리 886-4	구획	2014-03-17	1		
남구	28	2014-03-10	연일읍 ○○리 75-3	구획	2014-03-12	1		
남구	29	2014-03-10	구룡포읍 ○○리 131	점	2014-03-21	1		정산소홀
남구	30	2014-03-17	장기면 ○○리 359-1	구획	2014-03-19	1		
남구	31	2014-03-18	연일읍 ○○리 180-5	구획	2014-03-27	1		
남구	32	2014-03-20	호미곶면 ○○리 79-1	구획	2014-03-31	1		
남구	38	2014-02-26	○○동 254-329	구획	2014-03-31	1		
남구	40	2014-04-02	대송면 ○○리 627-1	구획	2014-04-08	1		
남구	41	2014-04-02	연일읍 ○○리 177-1	구획	2014-04-09	1		
남구	42	2014-04-04	○○동 24-17	분할식	2014-04-10	1		정산소홀
남구	43	2014-04-07	구룡포읍 ○○리 286	구획	2014-04-11	1		
남구	44	2014-04-07	○○동 483	구획	2014-04-10	4		
남구	45	2014-04-08	○○동 46-21	구획	2014-04-11	1		
남구	46	2014-04-11	구룡포읍 ○○리 157-169	구획	2014-04-16	1		
남구	47	2014-04-11	○○동 229-42	구획	2014-04-17	1		
남구	48	2014-04-14	구룡포읍 ○○리 371-1	구획	2014-04-16	2		
남구	54	2014-05-06	호미곶면 ○○리 778-1	구획	2014-05-20	2		
남구	57	2014-05-07	○○동 254-329	분할식	2014-05-21	1		정산소홀
남구	58	2014-05-08	구룡포읍 ○○리 708-32	분할식	2014-05-19	3		정산소홀
남구	59	2014-05-13	동해면 ○○리 240	구획	2014-05-28	1		
남구	61	2014-05-14	구룡포읍 ○○리 540	구획	2014-05-23	1		
남구	62	2014-05-20	장기면 ○○리 360	구획	2014-05-30	1		
남구	64	2014-05-26	구룡포읍 ○○리 58-1	구획	2014-06-03	1		
남구	66	2014-05-28	○○동 589-4	구획	2014-06-12	1		
남구	69	2014-06-03	○○동 18-165	선	2014-06-11	1		정산소홀
남구	71	2014-06-05	구룡포읍 ○○리 148-1	구획	2014-06-17	1		
남구	73	2014-06-10	장기면 ○○리 삼62-3	구획	2014-06-20	2		
남구	75	2014-06-16	장기면 ○○리 386-1	구획	2014-06-25	1		
남구	78	2014-06-24	대송면 ○○리 451	구획	2014-07-01	1		
남구	79	2014-07-04	○○동 254-329	구획	2014-07-07	1		
남구	82	2014-07-15	연일읍 ○○리 310-8	구획, 선	2014-07-21	2		정산소홀
남구	83	2014-07-15	장기면 ○○리 2-1	구획	2014-07-21	1		
남구	84	2014-07-21	○○동 161-1	구획	2014-07-28	1		
남구	87	2014-07-29	동해면 ○○리 248-1	구획	2014-08-04	1		
남구	88	2014-08-05	호미곶면 ○○리 15	구획	2014-08-08	1		
남구	89	2014-08-12	구룡포읍 ○○리 386	구획	2014-08-19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담당	비고
남구	90	2014-08-12	○○동 780-141	구획	2014-08-21	1		
남구	93	2014-08-19	호미곶면 ○○리 202-4	구획	2014-08-26	1		
남구	97	2014-08-25	구룡포읍 ○○리 582-6	구획	2014-09-01	1		
남구	98	2014-08-25	구룡포읍 ○○리 587	구획	2014-09-01	1		
남구	99	2014-08-25	구룡포읍 ○○리 591	구획	2014-09-01	1		
남구	100	2014-08-25	구룡포읍 ○○리 592-1	구획	2014-09-01	1		
남구	101	2014-08-25	구룡포읍 ○○리 570	구획	2014-09-01	1		
남구	103	2014-08-25	구룡포읍 ○○리 598-1	구획	2014-09-01	1		
남구	104	2014-08-25	○○동 3-63	구획	2014-08-28	1		
남구	106	2014-08-29	○○동 3-173	구획	2014-09-04	1		
남구	107	2014-09-02	구룡포읍 ○○리 370-25	구획	2014-09-05	1		
남구	108	2014-09-11	연일읍 ○○리 599	구획	2014-09-29	1		
남구	116	2014-09-29	동해면 ○○리 662-2	구획	2014-10-06	2		
남구	120	2014-10-06	구룡포읍 ○○리 157-275	구획	2014-10-14	1		
남구	123	2014-10-16	구룡포읍 ○○리 33-3	구획	2014-10-29	1		
남구	124	2014-10-20	○○동 254-325	구획	2014-10-29	2		
남구	125	2014-10-21	오천읍 ○○리 446	구획	2014-10-30	1		
남구	126	2014-10-21	○○동 900-4	구획	2014-10-22	2		
남구	127	2014-10-21	호미곶면 ○○리 860-1	구획	2014-11-04	1		
남구	128	2014-10-23	○○동 154-3	구획	2014-11-04	1		
남구	129	2014-10-24	장기면 ○○리 538-1	구획	2014-11-06	1		
남구	130	2014-10-27	구룡포읍 ○○리 144	구획	2014-11-05	1		
남구	131	2014-10-27	구룡포읍 ○○리 215	구획	2014-11-05	1		
남구	132	2014-10-27	구룡포읍 ○○리 219	구획	2014-11-05	1		
남구	133	2014-10-27	장기면 ○○리 8-1	구획	2014-11-10	4		
남구	134	2014-10-27	장기면 ○○리 8-2	구획	2014-11-10	1		
남구	135	2014-10-28	연일읍 ○○리 175-1	구획	2014-11-07	2		
남구	138	2014-11-10	장기면 ○○리 523-2	구획	2014-11-19	2		
남구	139	2014-11-13	구룡포읍 ○○리 35-5	구획	2014-11-20	2		
남구	140	2014-11-13	○○동 458	구획	2014-11-18	1		
남구	141	2014-11-14	구룡포읍 ○○리 190-64	구획	2014-11-26	1		
남구	142	2014-11-19	○○동 792-1	구획	2014-11-27	3		
남구	144	2014-11-25	호미곶면 ○○리 238-2	구획	2014-12-05	1		
남구	145	2014-12-01	구룡포읍 ○○리 406-6	구획	2014-12-09	1		
남구	146	2014-12-01	○○동 1-304	구획	2014-12-08	1		
남구	147	2014-12-01	구룡포읍 ○○리 395-8	구획	2014-12-09	1		
남구	148	2014-12-02	구룡포읍 ○○리 210	구획	2014-12-09	1		
남구	149	2014-12-05	구룡포읍 ○○리 219-5	구획	2014-12-11	1		
남구	150	2014-12-05	○○동 8-3	구획	2014-12-10	1		
남구	151	2014-12-08	구룡포읍 ○○리 768	구획	2014-12-10	1		
남구	152	2014-12-08	○○동 314	구획	2014-12-12	1		
남구	154	2014-12-10	장기면 ○○리 산51-3	구획	2014-12-15	1		
남구	155	2014-12-11	○○동 54-8	구획	2014-12-16	1		
남구	156	2014-12-12	구룡포읍 ○○리 110	구획	2014-12-18	2		
남구	157	2014-12-16	오천읍 ○○리 10-246	구획	2014-12-23	1		
남구	158	2014-12-19	동해면 ○○리 72-2	구획	2014-12-30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담당	비고
북구	12	2014-01-20	홍해읍 ○○리 409-1	구획	2014-01-24	1		
북구	15	2014-01-24	○○동 142-6	구획	2014-02-04	1		
북구	17	2014-02-06	청하면 ○○리 424	구획	2014-02-06	2		
북구	23	2014-02-26	홍해읍 ○○리 162-2	구획	2014-03-06	1		
북구	29	2014-03-06	기계면 ○○리 472-1	구획	2014-03-17	2		
북구	30	2014-03-06	기계면 ○○리 (1099-1)	구획	2014-03-12	1		
북구	31	2014-03-07	청하면 ○○리 217	구획	2014-03-19	2		
북구	33	2014-03-10	기계면 ○○리 (483-28)	구획	2014-03-12	1		
북구	54	2014-04-11	신광면 ○○리 104	구획	2014-04-21	2		
북구	57	2014-04-16	○○동 580-10	구획	2014-04-23	1		
북구	65	2014-05-02	송라면 ○○리 42	구획	2014-05-16	2		
북구	66	2014-05-07	홍해읍 ○○리 986-1	구획	2014-05-16	1		
북구	67	2014-05-07	청하면 ○○리 583-16	구획	2014-05-15	1		
북구	70	2014-05-15	홍해읍 ○○리 410-3	구획	2014-05-20	1		
북구	71	2014-05-15	청하면 ○○리 559-57	구획	2014-05-21	3		
북구	72	2014-05-19	청하면 ○○리 242	구획	2014-05-27	1		
북구	74	2014-05-22	기계면 ○○리 197	구획	2014-05-28	3		
북구	75	2014-05-22	○○2가 144-2	구획	2014-05-28	1		
북구	80	2014-05-26	기계면 ○○리 477-1	구획	2014-05-29	1		
북구	84	2014-05-29	청하면 ○○리 44	구획	2014-06-10	2		
북구	91	2014-06-11	○○2가 136-24	구획	2014-06-19	3		
북구	94	2014-06-20	홍해읍 ○○리 48-2	구획	2014-06-25	2		
북구	98	2014-06-24	홍해읍 ○○리 598-1	구획	2014-06-26	1		
북구	101	2014-06-26	○○동 44-4	구획	2014-06-27	1		
북구	104	2014-06-27	홍해읍 ○○리 36-4	분할식	2014-06-27	2		정산소홀
북구	106	2014-07-03	기계면 ○○리 782	구획	2014-07-07	4		
북구	110	2014-07-07	송라면 ○○리 610	구획	2014-07-08	4		
북구	114	2014-07-10	○○동 625-13	구획	2014-07-17	1		
북구	115	2014-07-10	홍해읍 ○○리 613-15	구획	2014-07-17	1		
북구	118	2014-07-18	홍해읍 ○○리 (420)	구획	2014-07-25	2		
북구	120	2014-07-22	○○2가 136-24	구획	2014-08-08	1		
북구	129	2014-07-30	기북면 ○○리 432	구획	2014-08-01	1		
북구	132	2014-07-30	청하면 ○○리 563-1	구획	2014-08-06	1		
북구	136	2014-08-08	청하면 ○○리 67	분할식	2014-08-12	2		정산소홀
북구	137	2014-08-12	신광면 ○○리 394-1	구획	2014-08-21	2		
북구	140	2014-08-14	청하면 ○○리 438-1	구획	2014-08-19	1		
북구	143	2014-08-21	홍해읍 ○○리 산92-8	구획	2014-09-01	2		
북구	147	2014-08-28	홍해읍 ○○리 392	구획	2014-09-03	1		
북구	148	2014-08-29	기계면 ○○리 584	구획	2014-09-04	2		
북구	149	2014-09-01	○○동 996-3	구획	2014-09-03	1		
북구	154	2014-09-18	죽장면 ○○리 139-1	구획	2014-09-25	1		
북구	157	2014-10-01	신광면 ○○리 705-34	분할식, 구획	2014-10-01	1		
북구	160	2014-10-06	송라면 ○○리 24-5	구획	2014-10-17	1		
북구	162	2014-10-06	청하면 ○○리 241-5	분할식	2014-10-08	1		정산소홀
북구	165	2014-10-16	기계면 ○○리 589	구획	2014-10-28	1		
북구	166	2014-10-20	○○동 54-4	구획	2014-11-13	1		
북구	177	2014-11-05	○○동 72-2	구획	2014-11-11	1		
북구	179	2014-11-06	청하면 ○○리 215	구획	2014-11-14	1		
북구	188	2014-11-18	○○동 645-14	구획	2014-11-25	1		

감 사

시정요구(지급, 회수)

제 목 민원창구수당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급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민원창구수당은 지사사무 및 민원(접수)창구 담당자에게 월 70,000원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하는 수당은 보수에 해당하며 보수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그 달에 지급할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민원창구수당 지급 현황]

(단위: 원)

월별	성 명	기지급액	정지급액		정산액	비 고
		민원창구수당	민원창구수당			
'14. 2	5급 ○○○	70,000	5급 ○○○ 5급 ○○○	67,500 2,500	2,500(회수) 2,500(지급)	접수 1일
	5급 ○○○	70,000	5급 ○○○ 5급 ○○○	62,500 2,500 5,000	7,500(회수) 7,500(지급)	
'14. 3	5급 ○○○	70,000	5급 ○○○ 5급 ○○○	67,750 2,250	2,250(회수) 2,250(지급)	접수 1일
'14. 4	5급 ○○○	70,000	5급 ○○○ 6급 ○○○	65,340 4,660	4,660(회수) 4,660(지급)	접수 2일
	5급 ○○○	70,000	5급 ○○○ 5급 ○○○ 5급 ○○○	65,340 2,330 2,330	4,660(회수) 4,660(지급)	
'14. 6	5급 ○○○	70,000	5급 ○○○ 6급 ○○○	65,340 4,660	4,660(회수) 4,660(지급)	접수 2일
	5급 ○○○	70,000	5급 ○○○ 6급 ○○○ 5급 ○○○	65,340 2,330 2,330	4,660(회수) 4,660(지급)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북구	192	2014-11-19	홍해읍 ○○리 296	구획	2014-11-27	1		
북구	193	2014-11-20	기계면 ○○리 456-1	분할식	2014-11-24	1		정산소홀
북구	194	2014-11-20	홍해읍 ○○리 694	구획	2014-11-26	2		
북구	195	2014-11-21	○○동 25	구획	2014-11-27	1		
북구	196	2014-11-25	○○동 120-20	구획	2014-11-28	1		
북구	199	2014-11-25	○○동 210-38	구획	2014-11-28	1		
북구	202	2014-11-28	홍해읍 ○○리 296	구획	2014-12-02	1		
북구	203	2014-12-02	송라면 ○○리 329-12	구획	2014-12-09	1		
북구	204	2014-12-02	홍해읍 ○○리 693	구획	2014-12-03	3		
북구	211	2014-12-12	○○동 829	구획	2014-12-18	1		

[2015년도 건물 공간정보 MOS 미등록 세부 현황]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남구	1	2015-01-01	○○동 254-166	구획	2015-01-02	2		
남구	5	2015-01-02	연일읍 ○○리 75-3	구획	2015-01-07	1		
남구	6	2015-01-15	구룡포읍 ○○리 721-1	구획	2015-01-21	2		
남구	15	2015-02-12	○○동 375-20	구획	2015-02-27	2		
남구	22	2015-03-12	장기면 ○○리 산177-1	구획	2015-03-24	1		
남구	33	2015-04-17	구룡포읍 ○○리 1092	구획	2015-04-28	2		
남구	34	2015-04-22	동해면 ○○리 607	구획	2015-05-08	1		
남구	42	2015-05-26	연일읍 ○○리 456	구획	2015-06-09	1		

소관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현황측량접수유형	측량일자	수량	측량팀장	비고
북구	6	2015-01-01	죽장면 ○○리 994	구획	2015-01-07	1		
북구	7	2015-01-01	홍해읍 ○○리 665	구획	2015-01-07	1		
북구	11	2015-01-08	기계면 ○○리 338-1	구획	2015-01-14	1		
북구	12	2015-01-08	○○동 499-3	구획	2015-01-14	2		
북구	15	2015-01-20	송라면 ○○리 622	구획	2015-01-23	1		
북구	17	2015-01-28	청하면 ○○리 427-1	구획	2015-02-02	1		
북구	25	2015-02-25	청하면 ○○리 514	구획	2015-03-04	2		
북구	30	2015-02-26	기북면 ○○리 292	구획	2015-03-06	3		
북구	31	2015-02-26	○○동 135	구획	2015-03-05	1		
북구	36	2015-03-04	죽장면 ○○리 300-1	구획	2015-03-11	1		
북구	55	2015-04-03	신광면 ○○리 581-1	구획	2015-04-15	1		
북구	59	2015-04-07	기북면 ○○리 380	구획	2015-04-16	1		
북구	65	2015-04-15	○○동 384-3	구획	2015-04-28	1		
북구	72	2015-04-20	홍해읍 ○○리 188	구획	2015-04-27	1		
북구	77	2015-04-27	○○동 434	구획	2015-05-11	1		
북구	78	2015-04-27	죽장면 ○○리 278-2	구획	2015-05-12	2		
북구	79	2015-04-28	기계면 ○○리 477-2	구획	2015-05-12	2		
북구	80	2015-04-30	홍해읍 ○○리 367-2	구획	2015-04-30	1		
북구	89	2015-06-05	기계면 ○○리 539-1	구획	2015-06-23	1		

(단위: 원)

월별	성 명	기지급액	정지급액		정산액	비 고
		민원창구수당	5급 ○○○	6급 ○○○		
'14. 7	5급 ○○○	70,000	5급 ○○○ 6급 ○○○	67,750 2,250	2,250(회수) 2,250(지급)	접수 1일
	5급 ○○○	70,000	5급 ○○○ 6급 ○○○ 5급 ○○○	65,500 2,250 2,250	4,500(회수) 4,500(지급)	접수 1일 접수 1일
'14. 8	5급 ○○○	70,000	5급 ○○○ 6급 ○○○ 5급 ○○○	63,250 4,500 2,250	6,750(회수) 6,750(지급)	접수 2일 접수 1일
	5급 ○○○	70,000	5급 ○○○ 5급 ○○○	58,750 11,250	11,250(회수) 11,250(지급)	접수 5일
	4급 ○○○	58,700	4급 ○○○	58,700	58,700(회수)	접수 0일
'14. 9	5급 ○○○	70,000	5급 ○○○ 5급 ○○○	65,340 4,660	4,660(회수) 4,660(지급)	접수 2일
'14. 10	5급 ○○○	70,000	5급 ○○○ 6급 ○○○	67,750 2,250	6,750(회수) 6,750(지급)	접수 1일
	5급 ○○○	70,000	5급 ○○○ 6급 ○○○ 5급 ○○○	63,250 4,500 2,250	6,750(회수) 6,750(지급)	접수 2일 접수 1일
'14. 11	5급 ○○○	70,000	5급 ○○○ 5급 ○○○	67,750 2,250	2,250(회수) 2,250(지급)	접수 1일
	5급 ○○○	70,000	5급 ○○○ 6급 ○○○	65,500 4,500	4,500(회수) 4,500(지급)	접수 2일
'14. 12	5급 ○○○	70,000	5급 ○○○ 5급 ○○○ 6급 ○○○	61,000 2,250 6,750	9,000(회수) 9,000(지급)	접수 1일 접수 3일
	5급 ○○○	70,000	5급 ○○○ 5급 ○○○	67,750 2,250	2,250(회수) 2,250(지급)	접수 1일
합 계		1,318,700		1,318,700	150,500(회수) 91,800(지급)	

그러므로 업무담당자의 휴가(연차, 병가, 특휴, 대휴), 교육 등 일신상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에 발생하는 수당의 지급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창구 근무지가 지사에서 남구청은 4km, 북구청은 6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하므로 시내업무 처리 교통비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담당자의 부재시 대체 근무자가 업무를 수행하여 처리하였음에도 위 지급현황과 같이 민원창구수당은 정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휴가 및 교육 등 사무분장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민원창구수당을 일할계산하여 150,500원을 회수 조치하고 91,800원은 지급하시기 바라며, 「급여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통 보 사

제 목 지사 사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항에 “○○○○○○공사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 점검을 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화재예방 등) 철저(○○실-2063: 2013. 4. 1., ○○실-3979: 2014. 5.26.)」를 통하여 자가 건물의 경우 2013년도에는 연 1회, 2014년도부터는 3년에 1회 ○○○○○공사로부터 전기안전 점검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지사사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현황]

구 분	점검실적	상 태	적 요
사옥 전기안전 점검	없 음	-	외부 전문기관(○○○○○○공사) 지사 사옥(자가 건물) 전기안전 점검 실적 없음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자가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전기안전 자가점검표에 의한 점검으로 대체하고 지사 사옥 신축(2011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전문기관인 ○○○○○공사에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등 지사 사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사사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시사항을 적극 준수하는 등 지사 사옥에 대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현장)지원시스템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사는 2011년부터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업무처리로 전환하고자 현장지원시스템(MOS)을 도입하여 종이도면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도면결재 처리를 전자파일에 의한 디지털 성과검사와 도면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목적은 공사에서 생성되는 측량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중앙 집중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더불어 고객에게 제공된 최종 측량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즉시 확인함으로써 업무 완료 이후 발생하는 지적민원처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에 따라 정산은 측량자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부 등의 결과에 의하여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5조(업무처리 전산화일 정리확인)에 따르면 업무처리부의 접수사항은 의뢰서, 완료사항은 지적측량결과도, 측량부, 면적측정부 등에 의하여 입력하며 그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지사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지원시스템(COS) 및 현장지원시스템(MOS)에 보관하는

측량정보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종 측량성과가 등록되어야 하며, 그 성과물은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 매뉴얼(성과물등록, p.37)”에 따라 완료된 업무의 측량결과물 [SIP로작성된성과물압축파일(측량결과도, 성과도, 면적측정부), 측량결과부(PDF), 현장측량파일(GDB), 이동정리파일, 추가이동정리파일, 관련필지이동정리파일], 지상경계점등록부(HWP/PDF), 조서, 부속자료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표1. 측량결과도 정산 현황]

구분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측량자	적요
현황측량	46	○○리 708-5번지	이○○	○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결과도에 기록된 면적이 상이 - 시스템: 1,024㎡, 220㎡, 248㎡ - 결과도: 1,081㎡, 163㎡, 248㎡
분할측량	58	○○리 728번지	이○○	○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결과도에 기록된 면적이 상이 - 시스템: 1,028㎡, 5,470㎡, 2,650㎡ - 결과도: 70㎡, 371㎡, 180㎡
분할측량	149	○○리 608번지	박○○	○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결과도에 기록된 면적이 상이 - 시스템: 497㎡, 1,953㎡ - 결과도: 333㎡, 2,117㎡
분할측량	235	○○리 152번지	홍○○	○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결과도에 기록된 면적이 상이 - 시스템: 661㎡, 327㎡, 665㎡ - 결과도: 636㎡, 328㎡, 689㎡
분할측량	270	○○리 154번지	황○○	○ 시스템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결과도에 기록된 면적 및 분할 수량 상이 - 시스템: 312㎡, 3,500㎡(2필) - 결과도: 176㎡, 312㎡, 3,324㎡(3필) ※ 소관청에는 2필로 검사 요청

그러나 <표 1>과 같이 업무지원시스템(COS)에 기록된 측량정보와 현장지원시스템(MOS)에 기록된 측량정보(측량결과도)가 고객의 요청 또는 소관청의 성과 재확인 요청 등으로 인해 측정면적이 수정되었음에도 시스템에 기록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분할 235호의 경우 측량결과 측정면적이 접수 당시의 면적과 다르게 성과가 산출되었으나 접수된 측량수수료에 변동이 없다하여 접수 당시 면적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분할 270호의 경우에는 공사에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에는 3필 분할한 것으로 측량결과도가 작성되어 공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관청에 성과검사 요청한 측량결과도와 업무지원시스템에는 2필로 정산 처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측량자의 업무처리와 지사장 확인이 소홀하여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종 측량정보 및 측량성과가 다르게 관련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현장(업무)지원시스템에 최종 성과물이 등록(기록)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SMS 전송)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사는 지적기반의 정확하고 편리한 국토정보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안정적인 국토 정보 인프라의 구축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통해 국토를 보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고객만족도 달성 및 최상의 지적측량 품질 제공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지원시스템(COS)의 “SMS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측량 접수 내용 및 진행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SMS 전송 문구”는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여 내용을 정형화하였으며, “SMS 전송 문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내부구성원들의 사용에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 접수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지적측량 진행 사항이 적절히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된 SMS 전송 문구(예시)

[LX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X대한지적공사] 현장측량 예정 시간약속을 위해 전화 드리겠습니다.
 [LX대한지적공사][금액]원이 오늘 입금 처리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LX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완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SMS 문자전송서비스) 운영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군위지사 문자서비스(SMS) 운영 현황]

기관별	업무현황		SMS 발송건수	적 요 (지사 발송 내용)
	접수건수	완료건수		
2014년	1, 216건	1,107건	354건	1. [LX대한지적공사]측량수수료 [00,000원] [○○○○○1000000000000]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2. [LX대한지적공사]반환금 [00,000원]원이 오늘 입금 처리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5년 (5.18.기준)	760건	629건	394건	1. [LX대한지적공사]측량수수료 [00,000원] [○○○○○1000000000000]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2. [LX대한지적공사]반환금 [00,000원]원이 오늘 입금 처리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업무지원시스템(COS)에서 추출한 SMS문자 전송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접수 및 완료건수는 일반/특수/부대를 포함한 총괄실적임.

그러나 <표 1> 현황과 같이 2014년도에 1,216건의 업무를 처리한 반면, “SMS 문자전송서비스” 이용실적은 354건으로 공사의 전사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와 달리 고객에게 안내 문자 전송 실적이 저조하고, 다양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데도 이용문자 내용이 단순 지적측량수수료 입금 요청 문자와 측량수수료 반환 안내에 머물고 있다.

결국 문자서비스 등과 같은 고객 중심의 다양한 고객서비스 활동이 미흡하여 2014년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본부 평균 98점(S등급) 보다 낮은 90.5점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 통 보 사

제 목 지적측량자료부 운영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1.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보 등록에 관한 사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제1항에 “지적측량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측량수행자는 측량 전에 관련 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측량연혁 및 성과결정에 사용한 기지점과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적측량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후 측량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자료는 현장지원시스템(MOS)상의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에 기록·관리하여 향후 인근 필지 업무 수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자료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등록사항정정 등과 같이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내부에서도 그 변동정보가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변동 이력이 지적측량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기록·관리되어야 하고, 내부구성원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측량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표 1.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통보 현황]

구분	소관청 통보 건수 (정정 대상 통보)	자료부 등록건수	비고
2013년	13	0	
2014년	49	0	
2015년	9	0	6. 25.기준

※ 소관청 통보 건수는 전자결재 “등록사항정정 통보” 건수 참조

이러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사에서는 지적측량자료부에 등록사항정정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 <표 1> 현황과 같이 등록사항정정 업무가 발생하여 측량정보 등록(불부합 여부, 소관청 통보 여부, 특기사항 등)이 필요함에도 그 정보를 관련시스템에 기록·관리하지 않았다.

2. 과거측량정보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규정」 제20조(지적측량결과도) 제3항에 “지적측량결과도의 자료조사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제3항에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전에 토지이동 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측량에 사용한 관련 자료는 지적측량 현장지원시스템(MOS)

상의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에 기록·관리하여 향후 인근 필지 업무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분할 제18호(효령면 ○○리 823-1번지)의 25건(표본조사)은 기존 측량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량 성과를 결정하고 결과도상에서도 색을 달리하여(파랑색) 결과도를 작성하였으나 지적측량자료부상 자료조사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고, 측량결과도상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등 업무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정보등록과 과거측량정보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시정요구(추징)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지적공부등록지 구분)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①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측량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의뢰인 정보 및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축척, 면적 등을 측량 필지 정보를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 직접측량비 중 가)직접인건비의 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지가계수,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자·집단지체감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품(인원수)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직접경비의 현장경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자격별,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별 지적측량품에 지가계수, 등록계수, 지역구분계수, 연속자·집단지체감계수, 면적계수 등을 계상한 공정의 외업품(인원수)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측량정보를 포함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이유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적측량수수료를 결정하는 공정의 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

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을 확인하여 보면 지적공부등록지(도해, 수치)를 기준으로 지적측량품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측량 접수 시 지적공부등록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지적측량의뢰서 접수)에 따르면 접수자는 의뢰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2014년도 지적측량(일반업무) 정산 현황]

구분	정산 내용				증감	접수자
	정		오			
	축척	수수료(원)	축척	수수료(원)		
경계 #274	수치	1,633,500	토지	1,289,200		강○○
경계 #510	수치	826,100	토지	658,900		강○○
계		2,459,600		1,948,100	511,500	

※ 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그러나 위 <표 1>현황과 같이 2014년도 경계복원측량 274호, 510호의 접수 내용의 확인 절차가 소홀함으로 인하여 수치로 등록되어 있는 측량 필지를 토지로 착오 접수되었고, 착오 접수된 지적공부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함으로 인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과소(511,500원)하게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소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511,500원)를 수입조치 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통 보 사

제 목 지사 기타계좌 시재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재무규정」 제17조(수입금의 수납) 및 제19조(수입금의 처리)에 “수입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수입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수납된 수입금은 지체 없이 지정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계사무처리규칙」 제37조(지출계좌설치)에 “회계책임자와 현금취급원은 제33조에 따른 수입계좌 설치은행에 지출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출계좌는 수입계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취급원의 경우에는 예금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사는 상기 규정을 근거로 지출계좌로 기타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 입출금시 ERP 회계관리시스템에서 현금출납등록부에 등록하여 시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ERP 회계관리시스템에 현금출납등록부 등록과 시재관리를 명확히 하여 기타계좌가 공금 횡령 및 유용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현금흐름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임 현황과 같이 지사 기타계좌에 대한 ERP 회계관리시스템 현금출납부에 은행 거래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등 현금출납부 등록과 시재관리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재무규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금출납부 미등록 현황]

(2014. 1. 1. ~ 2015. 6. 23.)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적 요	출금액	입금액	잔액	비 고
2014. 1.24.	공인인증서 재발급	4,400		4,400	현금출납부 미등록
2014. 1.27.	공인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지급		4,400	0	"
2014. 3.23.	예금이자 발생	8		8	"
2014. 3.24.	예금이자 발생 여입		8	0	"
2014. 3.25.	여비교통비 착오분	40,000	0	40,000	"
2014. 3.26.	여비교통비 착오금액 여입분		40,000	0	"
2014. 5. 9.	공간정보업무 보상금	971,000		971,000	"
2014. 5.13.	공간정보업무 보상금 지급		971,000	0	"
2014. 6.16.	업무비 여비교통비 미지급금	100,000		100,000	"
2014. 6.17.	업무비 여비교통비 지급		100,000	0	"
2014. 6.29.	예금이자 발생	10		10	"
2014. 7. 2.	예금이자 발생 여입		10	0	"
2015. 3.10.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1,000		1,000	"
2015. 3.11.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지급		1,000	0	"
2015. 4.10.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1,000		1,000	"
2015. 4.13.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지급		1,000	0	"
2015. 5.11.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1,000		1,000	"
2015. 5.12.	거래내역 알림서비스 수수료 지급		1,000	0	"

감 사 통 보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사. 업무추진비(11p)에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자료수집·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 격려, 간담회, 기타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배정된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고 되어 있다.

그러나 표 1과 같이 총 14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은 보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로 사업추진비로 예산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정과목을 기관운영비로 ERP상에 작성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운영비 예산계정과목 적용에 소홀하였다.

[표1.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사용 현황]

(금액단위: 원)

사용일	예산명	집행자	집행대상	집행목적	합계금액
2014.03.05.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팀장 ○○○ 외 20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소관청과의 연찬회	300,000
2014.04.17.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계장 ○○○ 외 5인	공유토지분할 관련 업무 협의차	112,000
2014.05.07.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팀장 ○○○ 외 6인	상반기 지적기준점 계약 및 설치에 관한 업무협의	144,000
2014.05.27.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팀장 ○○○ 외 3인	지적기준점(도근점) 복구 관련 업무협의차	61,000
2014.06.18.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제조사팀장 ○○○ 외 3인	지적제조사 청구관련 및 타지구 협의차	84,000
2014.07.08.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제조사TF팀장 ○○○ 외 4인	지적제조사사업지구 기준점설치관련 업무협의차	83,000
2014.09.05.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담당 ○○○ 외 10인	2014년 하반기 업무처리 협의차	200,000
2014.10.07.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제조사팀장 ○○○ 외 3인	원남면 기양지구 지적제조사사업 업무협의차	77,000
2014.10.29.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담당 ○○○ 외 4인	제조사지구 및 좌표변환 기준점 관련 업무협의차	52,000
2014.11.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제조사TFT 팀장○○○ 외 5인	원남면기양지구 제조사사업 기준점 관련 업무 협의차	110,000
2014.11.24.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계장 ○○○ 외 7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동점 관측 업무협의차	140,000
2015.01.22.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민원실장 ○○○ 외 5인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관련 협의차	58,000
2015.02.16.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민원실장 외 5인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관련 협의차	80,000
2015.03.11.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군청 지적팀장 ○○○ 외 3인	철도사업관련 업무협의차	44,000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사규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업무 처리(검사요청 등)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 업무 처리에 있어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세부적으로 처리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사유를 반드시 업무지원시스템에 기재함은 물론 측량 일정, 보완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서는 지적측량 수행(변경)계획서를 사유 발생 익일 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고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또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 기간은 4일로 하며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 측량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에 의하여 수수료 정산사항을 확인한 후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검사요청 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도를 접수한 일자를 업무완료 일자로 하고 또한 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 업무완료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붙임 현황과 같이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 완료 이후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검사요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에도 즉시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2015. 6. 17. 현재까지 39건의 업무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 중인 상태로 무단 지연되고 있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측량업무 지연 현황(2015. 1. 1. ~ 2015. 6. 17.)]

번호	접수일	종목(번호)	토지소재지	측량일	정산일	측량자	비고
1	'15. 6. 3.	분할측량(112)	북면 ○○리 10	'15. 6. 4.	'15. 6. 4.		정산중
2	'15. 6. 9.	분할측량(119)	기성면 ○○리 산87-6	'15. 6. 10.	'15. 6. 10.		"
3	'15. 5. 19.	등록전환(5)	기성면 ○○리 산87-6	'15. 6. 10.	'15. 6. 10.		"
4	'15. 5. 15.	경계복원(225)	죽변면 ○○리 83-6	'15. 6. 5.	'15. 6. 15.		"
5	'15. 6. 15.	지적현황(65)	북면 ○○리 17	'15. 6. 16.	'15. 6. 16.		"
6	'15. 6. 9.	분할측량(118)	울진읍 ○○리 679	'15. 6. 12.	'15. 6. 12.		"
7	'15. 5. 6.	분할측량(98)	죽변면 ○○리 222-2	'15. 6. 15.	'15. 6. 15.		"
8	'15. 5. 15.	지적현황(66)	기성면 ○○리 810-1	'15. 6. 3.	'15. 6. 15.		"
9	'15. 5. 28.	분할측량(109)	기성면 ○○리 1084-1	'15. 6. 15.	'15. 6. 15.		"
10	'15. 3. 23.	지적현황(43)	북면 ○○리 410-9	'15. 3. 24.	'15. 3. 24.		"
11	'15. 5. 27.	지적현황(70)	후포면 ○○리 316-126	'15. 6. 12.	'15. 6. 15.		"
12	'15. 5. 27.	지적현황(71)	후포면 ○○리 316-127	'15. 6. 12.	'15. 6. 15.		"
13	'15. 5. 28.	지적현황(72)	후포면 ○○리 316-120	'15. 6. 12.	'15. 6. 15.		"
14	'15. 6. 5.	지적현황(78)	후포면 ○○리 316-123	'15. 6. 12.	'15. 6. 15.		"
15	'15. 5. 29.	분할측량(110)	매화면 ○○리 639-1	'15. 6. 12.	'15. 6. 12.		"
16	'15. 6. 12.	분할측량(125)	후포면 ○○리 581-17	'15. 6. 16.	'15. 6. 16.		"
17	'15. 5. 19.	분할측량(105)	금강송면 ○○리 산17-14	'15. 6. 2.	'15. 6. 9.		"
18	'15. 5. 19.	분할측량(104)	금강송면 ○○리 19-5	'15. 6. 2.	'15. 6. 9.		"
19	'15. 6. 4.	분할측량(113)	죽변면 ○○리 35-19	'15. 6. 5.	'15. 6. 5.		"
20	'15. 6. 4.	지적현황(76)	북면 ○○리 749-4	'15. 6. 10.	'15. 6. 11.		"
21	'15. 5. 13.	분할측량(102)	근남면 ○○리 1274-2	'15. 5. 14.	'15. 5. 14.		"
22	'15. 6. 5.	분할측량(115)	북면 ○○리 238	'15. 6. 9.	'15. 6. 9.		"
23	'15. 5. 18.	경계복원(228)	근남면 ○○리 738	'15. 6. 11.	'15. 6. 11.		"
24	'15. 6. 10.	분할측량(123)	근남면 ○○리 131-8	'15. 6. 15.	'15. 6. 15.		"
25	'15. 6. 5.	경계복원(특67)	죽변면 ○○리 246-14	'15. 6. 8.	'15. 6. 8.		"
26	'15. 6. 1.	지적현황(특48)	후포면 ○○리 391-2	'15. 6. 4.	'15. 6. 8.		"
27	'15. 6. 1.	경계복원(특65)	후포면 ○○리 363-1	'15. 6. 4.	'15. 6. 8.		"
28	'15. 6. 1.	지적현황(특47)	온정면 ○○리 510	'15. 6. 4.	'15. 6. 8.		"
29	'15. 6. 1.	분할측량(특87)	서면 ○○리 526	'15. 6. 4.	'15. 6. 4.		"
30	'15. 5. 27.	경계복원(특63)	근남면 ○○리 662-4	'15. 6. 5.	'15. 6. 8.		"
31	'15. 5. 27.	분할측량(특85)	울진읍 ○○리 184-79	'15. 6. 12.	'15. 6. 15.		"
32	'15. 4. 30.	분할측량(특74)	온정면 ○○리 875-2	'15. 5. 7.	'15. 5. 7.		"
33	'15. 4. 30.	분할측량(특73)	울진읍 ○○리 351-3	'15. 6. 4.	'15. 6. 4.		"
34	'15. 4. 15.	경계복원(특44)	기성면 ○○리 413-2	'15. 4. 15.	'15. 4. 15.		"
35	'15. 4. 6.	분할측량(특48)	근남면 ○○리 산7-3	'15. 5. 1.	'15. 6. 11.		"
36	'15. 6. 9.	지적현황(특52)	평해읍 ○○리 316	'15. 6. 9.	'15. 6. 9.		"
37	'15. 2. 5.	경계복원(특15)	온정면 ○○리 538	'15. 2. 5.	'15. 2. 5.		"
38	'15. 1. 26.	분할측량(특18)	온정면 ○○리 538	'15. 6. 15.	'15. 6. 15.		"
39	'15. 1. 1.	구획정리(특4)	후포면 ○○리 649-1	'15. 5. 26.	'15. 6. 1.		"
계		39건					

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접수 및 연기처리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3항에 의하여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로 되어있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리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또한 「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업무의 연기처리) 제①항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중 고객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하고(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일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처리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업무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측량예정일 등을 고객에게 문서, 구술,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본부 ○○지사의 2015년도 업무목표량은 15.36억원이

며 2015. 6. 16.기준 접수금액은 8.6억원, 완료금액은 3.23억원으로 완료비율(21%)이 연간 업무기간 대비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경제복원 및 지적현황측량의 접수현황에 의하면 처리기간(5일)을 초과하는 일자지정 접수 비율이 97.2%로 과다하여 신청인의 원에 의했다 보기 어렵고, 완료실적(21%)에 비추어 볼 때 일자지정(처리기간 초과) 접수비율은 과다하다.

[표1. 2015년도 경제복원 및 지적현황 접수 현황]

(단위: 건)

년도	총건수(A)	일자지정(B)	기간내접수(C)	비율(B/A)	
2015년	286	278	8	97.2%	6.16.기준

또한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업무규정시행규칙」 제 7조(업무의 연기처리)의 의해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5. 6. 3.일자 「지적측량 수행(변경) 계획내역서」를 샘플로 확인한 결과 <붙임1>과 같이 입회불가, 허가서류 변경, 분할선 미결정 등 신청자의 연기요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기신청서 등 근거서류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연기처리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측량 수행(변경) 계획내역서 현황(2015.6.3.)]

측량외의 월일	번호	측량종 목	토지 소재			측적	측량시행		변경사유	연기일자	근거서류
			읍· 면	동· 리	지번		착수일 (측망일)	완료일			
9) 2015-06-01	(92)	분할측량	금강송면	○○리	91	1,200	2015-06-08	2015-07-31	보완통지-보완요청 (허가서류 안맞아 보완 요청)	6.3	없음
2015-06-01	74	지적현황	북면	○○리	112	1,200	2015-06-18	2015-06-18	일자지정		
(2015-05-20) 2015-06-01	(1)	등록전환	기성면	○○리	산25	1,200			수량변경(증/감)	6.3	없음
2015-06-01	86	분할측량	기성면	○○리	53	1,200	2015-06-03	2015-06-17	일자지정		
2015-06-01	87	분할측량	서면	○○리	526	1,200	2015-06-18	2015-06-30	일자지정		
(2015-04-30) 2015-06-01	(71)	분할측량	윤진읍	○○리	산113	6,000			수량변경(증/감)	5.19	
(2015-05-27) 2015-06-01	(82)	분할측량	기성면	○○리	산25	6,000			소재지추가	6.3	없음
2015-06-01	64	경제복원	북면	○○리	273	1,200	2015-06-17	2015-06-17	일자지정		
2015-06-01	65	경제복원	후포면	○○리	363-1	1,200	2015-06-04	2015-06-04	일자지정		
2015-06-01	46	지적현황	윤진읍	○○리	308-6	1,200	2015-06-18	2015-06-18			
2015-06-01	47	지적현황	운정면	○○리	510	1,200	2015-06-04	2015-06-04	일자지정		
2015-06-01	48	지적현황	후포면	○○리	391-2	1,200	2015-06-04	2015-06-04	일자지정		
2015-06-01	49	지적현황	금강송면	○○리	산45-31	6,000	2015-06-15	2015-06-15	일자지정		
(2015-05-20) 2015-06-01	(42)	지적현황	평해읍	○○리	산118	6,000			수량변경(증/감)		
(2015-01-01) 2015-06-01	(4)	확정(구 획정리)	후포면	○○리	(649-1)	500			수량변경(증/감)		
2015-05-14	103	분할측량	근남면	○○리	834-2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입회불가로 연기)	6.11	
2015-05-27	107	분할측량	근남면	○○리	86-1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허가서류 경)	6.3	없음
2015-05-27	108	분할측량	후포면	○○리	179-2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허가서류 변경)	6.3	없음
2015-03-24	57	분할측량	근남면	○○리	308-6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합병관계 지연으로)	6.3	없음
2015-04-14	79	분할측량	후포면	○○리	283-6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이해관계인 미협의)	6.3	없음
2015-04-15	81	분할측량	북면	○○리	749-2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허가 변경으로 연기)	6.3	없음
2015-04-22	83	분할측량	북면	○○리	348-3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분할선미결정)	6.3	없음
2015-04-23	86	분할측량	북면	○○리	357-2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허가서류 변경)	6.3	없음
2015-04-29	92	분할측량	금강송면	○○리	91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허가서류 보완)	6.3	없음
2015-06-02	238	경제복원	후포면	○○리	555-16	1,200	2015-06-08	2015-06-08	일자지정		
2015-06-02	239	경제복원	기성면	○○리	510	1,200	2015-06-18	2015-06-18	일자지정		
2015-06-02	75	지적현황	북면	○○리	1200	1,200	2015-06-17	2015-06-17	일자지정		
2015-01-07	4	신규등록	후포면	○○리	625-26	1,200	2015-06-23	2015-06-30	연기신청-본인연기 (인접지 경제정경협의관계로)	6.3	없음

2015-01-26	18	분할측량	온정면 00리 538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분할선 변경으로)	6.3	없음
2015-02-03	24	분할측량	평해읍 00리 84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도로사동선 미협의)		
2015-02-03	25	분할측량	평해읍 00리 316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동지원용서류 지연)		
2015-02-03	26	분할측량	평해읍 00리 산5-1	6,0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변경으로)		
2015-04-14	60	분할측량	온정면 00리 산164	6,0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미비)	6.3	없음
2015-04-16	62	분할측량	북면 00리 365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미비)	6.3	없음
2015-04-21	64	분할측량	울진읍 00리 686-8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인접소유자 미협의)	6.3	없음
2015-04-21	65	분할측량	울진읍 00리 산51	6,0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인접소유자 미협의)	6.3	없음
2015-04-30	72	분할측량	평해읍 00리 산60-2	6,0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분할선 미협의)	6.3	없음
2015-04-30	73	분할측량	울진읍 00리 351-3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민원인 협의)	6.3	없음
2015-05-11	76	분할측량	죽변면 00리 1021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변경)	6.3	없음
2015-05-12	77	분할측량	북면 00리 259-1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변경)	6.3	없음
2015-05-20	78	분할측량	기성면 00리 199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분할선 미협의)		
2015-05-20	79	분할측량	기성면 00리 199-1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분할선 미협의)		
2015-05-20	80	분할측량	서면 00리 852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미비)	6.3	없음
2015-05-22	81	분할측량	온정면 00리 453-5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분할선 미협의)	6.3	없음
2015-05-27	82	분할측량	기성면 00리 산25	6,0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허가서류 변경으로)	6.3	없음
2015-04-29	52	경계복원	울진읍 00리 686-9	1,200	2015-06-30	2015-06-30	연기신청-분인연기 (인접소유자 미협의)	6.3	없음
2015-05-27	61	경계복원	울진읍 00리 590-6	1,200			접수취소		
2015-05-27	62	경계복원	울진읍 00리 836-18	1,200			소재지추가		
2015-06-02	66	경계복원	울진읍 00리 산71-8	6,000	2015-06-03	2015-06-03			
2015-05-12	40	지적원황	기성면 00리 (725-2)	1,200			소재지추가		
2015-05-12	40	지적원황	기성면 00리 725	1,200			소재지삭제		

감 사 통 보

제 목 측량장비 및 성능검사장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0000지역본부 00지사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제도와 공간정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측량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측량장비 성능검사 및 수리업무개선(00실-3807; 2012.08.29.), 간이성능검사장 설치(00실-5081(2012.11.20.) 지시에 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최적의 장비성능 유지를 위하여 측량장비 간이 성능검사장을 설치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업무규정」 제24조(측량장비관리) 및 같은 규정 제25조(측량장비의 보존)에 따라 연1회 이상 측량장비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측량장비 보관창고의 청결상태 유지와 방화·방충 및 도난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측량장비점검부에 점검실적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다.

[표1. 측량장비 관리 및 간이성능검사장 관리현황]

측량장비 점검부	장비고	간이성능검사장			비고
		설치여부	검측기준	실적	
미흡	양호	설치	없음	없음	

그러나 간이성능검사장의 기본이 되는 수평각 등의 표준 검측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거리를 검측하기 위한 고정식 타깃(target)이 일부 망실되었으며, 측량장비 성능에 대한 분기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측량장비 성능관리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최적의 측량장비 성능유지를 위하여 측량장비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